

1 목적 · 일반 정의 및 상품협정문

1. 목적 · 일반 정의

-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달성, 경쟁 촉진, 지적재산권 보호, 지속 가능 개발, 교역 장벽 제거 등 협정의 목적 열거
- 협정의 당사자, 한·EU 기본협력협정 및 한·EU 세관협정에 대한 정의

2. 상품협정문

-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각 상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 (제2.5조)
 - 협정 발효 3년후 일방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의 가속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의무 부과
- 수입 수수료의 경우, GATT 제8조에 따라 수입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소요된 대략적인 비용과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부과 가능
 - 추가적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증가세(ad valorem) 형태의 수입 수수료는 부과될 수 없음을 명시 (제2.10조)
- 자동차, 전기·전자, 의약품, 화학물질 등 상품 관련 비관세부속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 (제2.14조)
 - 협정 발효 3년후 일방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상품 관련 비관세 부속서에 따른 의무의 확대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의무 부과



2 관 세

1. 개 요

- 한·EU 양측은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
 - 수입액 기준, EU측은 모든 대한민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우리는 대EU 수입 97.0%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 품목수 기준, EU측은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우리는 93.6%를 5년내 철폐
 - ※ 양측 모두 쌀(우리 16개 세번, EU측 39개 세번)을 양허제외
- EU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모든 관세를 5년 이내에 철폐키로 한 반면, 우리는 다수의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관세유지, 장기철폐 등의 예외적 취급을 확보
 - ※ EU측도 일부 과일 및 채소류(16개 세번, 대한수입비중 0.0%)에 대해 일정 기간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

상품 양허 결과

(단위 : 억불, %)

양허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품목수	비 중	對EU 수입액	비 중	품목수	비 중	對한국 수입액	비 중
즉시 (A)	9,195	81.7%	182	66.7%	9,252	94.0%	318	76.6%
2-3년 (B)	625	5.5%	61	22.2%	282	2.9%	69	16.7%
5년 (C)	718	6.4%	22	8.1%	269	2.7%	28	6.7%
5년내 (A)+(B)+(C)	10,538	93.6%	265	97.0%	9,803	99.6%	415	100%
6-7년	111	1.0%	4	1.4%				
10년	399	3.5%	3	1.1%				
10년 초과	169	1.5%	1	0.5%				
양허제외/현행관세	44	0.4%	0	0.0%	39	0.4%	0	0.0%
총합계	11,261	100%	273	100%	9,842	100%	415	100%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임

** 농업셰이프가드, 수입쿼타, 시장진입가격제도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2. 상세 내용

1) 공산품 양허(임산물 포함)

- 한·EU 양측은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품목수 및 수입액 모두에 있어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비대칭적 관세철폐 의무 이행에 합의
 - 수입액 기준, EU측은 즉시 철폐 구간에서 7.3%, 3년내 조기철폐 (즉시+3년) 구간에서 1.5%를 우리에게 비해 더 많이 철폐
 - 품목수 기준, EU측은 99.4%에 해당하는 품목을 3년내 조기철폐 하는 반면, 우리는 95.8%를 3년내 조기철폐
 - 아울러, EU측은 모든 품목의 관세를 5년내 철폐하기로 한 반면, 우리는 의료용전자기기, 건설 중장비, 순모직물, 합판 등 품목(수입액 기준 1.3%)에 대해 7년 철폐 구간을 확보
- ☞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의 對EU 수출 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 및 잠재적 수출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 제고



- 특히, EU측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 중국에 비해 EU 시장에서 우리 업계에 유리한 경쟁 기반 조성 등의 효과 기대

공산품 분야 관세 양허 결과

(단위 : 억불)

양허 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품목수	비 중	對EU 수입액	비 중	품목수	비 중	對한국 수입액	비 중
즉시 철폐(A)	8,535	90.7%	180	69.4%	7,201	97.3%	318	76.7%
3년 철폐(B)	478	5.1%	58	22.4%	151	2.1%	68	16.6%
조기 철폐(A+B)	9,013	95.8%	238	91.8%	7,352	99.4%	386	93.3%
5년 철폐	346	3.7%	18	6.9%	46	0.6%	28	6.7%
7년 철폐	45	0.5%	3	1.3%				
총합계	9,404	100.0%	259	100.0%	7,398	100.0%	414	100.0%

-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이자 EU측의 최대 민감품목인 승용차 관련, 중·대형(1,500cc초과)은 협정 발효후 3년내, 소형(1,500cc이하)은 5년내 철폐(우리도 동일하게 양허)
 - 특히, 對EU 자동차 수출의 70% 이상(對EU 수출의 13.2%)을 차지하는(2004-2006년 평균 기준) 중·대형 승용차 관세(10%)를 EU측이 3년내 철폐기로 한 것은 미국이 승용차 관세(2.5%)를 즉시 철폐기로 한 것보다 더 큰 개방 효과 기대 가능
 - 아울러, 기술린 자동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양측이 즉시 철폐
- 전기전자, 섬유류, 신발류 등 EU측 고관세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 관련 업계의 對EU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기전자 관련, 칼라TV(14%) 등 EU측의 고관세 품목 관세를 5년내 철폐기로 하였으며, 전기전자부품을 모두 즉시 철폐하여 현지 우리 업체의 부품 조달비용을 축소함과 동시에 국내 부품 업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내 부품산업 육성에도 기여
 - 섬유 관련, EU측은 상대적으로 10% 이상의 고관세가 많은 섬유

제품을 품목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99.9%를 즉시철폐함에 따라 우리 업계의 對EU 수출 용이

※ 한·미 FTA 미국 섬유양허(수입액기준) : 즉시철폐(61.2%), 5년(18.6%), 10년(20.2%)

○ 신발류 관련, 양측 모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기로 함에 따라, EU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 신발류(HS 64류) 관세율 : 우리측(8%, 13%), EU측 (3~17%)

※ EU 수입시장점유율(2007~2008년 평균) : 중국(45.6%), 베트남(16.8%), 한국(0.2%)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 관세율%

양허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즉시	자동차부품(8), 기타정밀화학원료(1~8), 계측기(8), 직물제의류(8~13), 스키부츠(8,13), 인쇄기계(8), 칼라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광학기계(8), 화학기계(8), 전구(8), 섬유기계(5~8), 식품포장기계(8), 컴퓨터 부품(8), 항공기부품(3~8), 계측기부품(8) 등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스웨터(12), 편직물(8), 냉장고(1.9), 에어컨(2.7), 라디오(9~12), 스키부츠(8~17), 폴리에스테르 직물(8), 진공청소기(2.2), 아세탈수지(6.5), 천연색음극선관(14), 남성셔츠(12), 연축전지(3.7), 리튬전지(4.7) 등
3년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8), 기타정밀 화학제품(5~8), 펌프(8), 선박용 엔진및 그부품(8), 무선통신 기기부품(8), 안경(8), 의약품(6.5), 화장품(8), 철도차량(5), 철도차량부품(5), 선박용부품(8), 안경(8), 변환및안정기(8), 식품가공기계(8) 등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5~4.5), 합성수지(6.5), 고무벨트(6.5), 복사기(6), 전자레인지(5), 주방용도자기제품(12), 항공기(7.5~7.7), 기타신발(16.8), 자전거(15) 등
5년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8), 하이브리드카(8), 밸브(8), 베어링(8), 시멘트(8), 윤활유(7), 기초 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제재목(5), 원동기(8), 펌프(8), 화물자동차(10), 의료용전자기기(8), 기타요업제품(8) 등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하이브리드카(10), 칼라TV(14), TV카메라및수상기(14), 카스테레오(10), 광학기기부품(6.7), 순모직물(8), 모사(3.8) 영상기록재생용기기(14), 화물자동차(22) 등
7년	순모직물(13), 모사(8), 동조가공품(8), 수산화나트륨(8), 건설중장비(8), 인쇄기계(8), 금속절삭가공기계(8), 기타기계류(16), 합판(8~12), 섬유판(8), 파티클보드(8), 표면활성제(8), 밸브(8), 베어링(8), 의료용전자기기(8), X선및방사선기기(8), 합성고무(8) 등	없음



양축 공산품 양허수준 : 한·미 FTA와의 비교

(단위: 억불, %)

양허 유형	한-EU FTA								한미 FTA							
	한국 양허				EU 양허				한국 양허				미국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철폐 ^(A)	8,535	90.7	180	69.4	7,201	97.3	318	76.7	8,453	89.9	202	81.0	7,424	87.3	347	85.5
3년 철폐 ^(B)	478	5.1	58	22.4	151	2.1	68	16.6	594	6.3	33	13.2	346	4.1	28	6.9
조기 철폐 ^(A+B)	9,013	95.8	238	91.8	7,352	99.4	386	93.3	9,047	96.2	235	94.3	7,770	91.4	375	92.4
5년 철폐	346	3.7	18	6.9	46	0.6	28	6.7	177	1.9	4	1.5	339	4.0	14	3.4
7년 철폐	45	0.5	3	1.3	-	-	-	-	-	-	-	-	-	-	-	-
10년 철폐	-	-	-	-	-	-	-	-	180	1.9	11	4.2	392	4.6	17	4.2
총합계	9,404	100	259	100	7,398	100	414	100	9,404	100	250	100	8,501	100	406	100

주요 품목별 한·EU 및 한·미 FTA 양허 비교

() : 관세율%

품 목		한-EU FTA		한미 FTA	
		한국	EU	한국	미국
자동차	o 중대형(1500cc초과)	(8%) 3년	(10%) 3년	(8%) 즉시	(2.5%)가솔린/중소형: 즉시 (2.5%)가솔린대형: 3년
	o 소형(1500cc이하)	(8%) 5년	(10%) 5년	(8%) 즉시	(2.5%)디젤/대중소형: 3년
	o 기타(하이브리드)	(8%) 5년	(10%) 5년	(8%) 10년	(2.5%) 10년
화물 자동차	o 승합차	(10%) 즉시	(10~16%) 즉시	(10%) 즉시	(2%) 3년
	o 디젤/5톤이하 화물차	(10%) 즉시	(22%) 5년	(10%) 즉시	(25%) 10년
	o 디젤/20톤초과 화물차	(10%) 5년	(22%) 3년	(10%) 즉시	(25%) 10년
	o 도로주행 트랙터	(8%) 5년	(16%) 3년	(8%) 즉시	(4%) 3년
자동차 부품	o 디젤엔진부품	(8%) 즉시	(2.7%) 즉시	(8%) 즉시	(2.5%) 즉시
	o 카스테리어	(8%) 즉시	(14%) 즉시	(8%) 즉시	(0~2%) 즉시
	o 기어박스	(8%) 즉시	(4.5%) 즉시	(8%) 즉시	(2.5%) 즉시
	o 타이어	(8%) 즉시	(2.5~4.5%) 3년	(8%) 즉시	(0~4.2%) 즉시, 5년
선박	o 선박 완성품	(0~8%) 즉시	(0~2.7%) 즉시	(0~8%) 즉시, 3년	(0~2.7%) 즉시
	o 부품	(0~8%) 즉시, 3년, 5년	(0~2.7%) 즉시	(0~8%) 즉시, 3년, 5년, 10년	(0~6.7%) 즉시
칼라 TV	o 칼라 TV 완성품	(8%) 즉시	(14%) 5년	(8%) 즉시	(0~5%) 즉시, 3년
	o 천연색음극선관	(8%) 즉시	(14%) 즉시	(8%) 즉시	(3%) 즉시
	o 수상기	(8%) 즉시	(14%) 5년	(8%) 즉시	(3.9~5%) 즉시
냉장고	o 냉장고 완성품	(8%) 즉시	(1.5~2.2%) 즉시	(8%) 즉시	(1.9%) 즉시
	o 부품	(8%) 즉시	(2.2%) 즉시	(8%) 즉시	(0%) 즉시
에어컨	o 에어컨 완성품	(8%) 즉시	(2.7%) 즉시	(8%) 즉시	(0~2.2%) 즉시

품목		한-EU FTA		한-미 FTA	
		한국	EU	한국	미국
섬유 및 의류	o 순모직물	(13%) 5년, 7년	(8%) 즉시, 5년	(13%) 즉시	(7~25%) 즉시
	o 편직제의류(61류)	(8~13%) 즉시	(2~12%) 즉시	(8~13%) 즉시	(0~32%) 즉시, 5년, 10년
	o 직물제의류(62류)	(8~13%) 즉시	(6.5~12%) 즉시	(8~13%) 즉시	(0~28.6%) 즉시, 5년, 10년
	o 합성섬유(54/55류)	(8~10%) 즉시	(8%) 즉시	(8~10%) 즉시	(0~25%) 즉시, 5년, 10년
의료용 기기	o X선방사선기기	(8%) 즉시/3년/5년/7년	(2.1%) 즉시	(8%) 즉시/3년/10년	(0~1.4%) 즉시
	o 초음파영상진단기기	(8%) 5년	(0%) 즉시	(8%) 10년	(0%) 즉시
	o 콘택트렌즈	(8%) 3년	(2.9%) 즉시	(8%) 3년	(2%) 3년
	o 자기공명촬영기	(8%) 5년	(0%) 즉시	(8%) 10년	(0%) 즉시
	o 심전계	(8%) 5년	(0%) 즉시	(8%) 10년	(0%) 즉시
의약품	o 원제의약품(소매/벌크)	(8%) 즉시, 3년	(0%) 즉시	(8%) 즉시, 3년	(0%) 즉시
	o 비타민제	(6.5%) 즉시, 3년	(0%) 즉시	(6.5%) 즉시	(0%) 즉시
	o 호르몬제	(0~6.5%) 즉시	(0%) 즉시	(0~6.5%) 즉시	(0%) 즉시
	o 항생제	(6.5%) 즉시	(0%) 즉시	(6.5%) 즉시	(0%) 즉시
화장품	o 기초화장품	(8%) 5년	(0%) 즉시	(8%) 10년	(0%) 즉시
	o 웨이스파우더	(8%) 5년	(0%) 즉시	(8%) 즉시	(0%) 즉시
	o 향수	(8%) 3년	(0%) 즉시	(8%) 3년	(0%) 즉시
	o 립스틱	(8%) 3년	(0%) 즉시	(8%) 3년	(0%) 즉시
	o 헤어린스	(8%) 5년	(0%) 즉시	(8%) 5년	(0%) 즉시
비철금속	o 동과 그 제품	(8%) 즉시, 3년, 5년, 7년	(0~5.2%) 즉시, 3년	(8%) 즉시, 3년	(0~3%) 즉시, 3년
	o 알루미늄과 그 제품	(8%) 즉시, 3년, 5년	(0~10%) 즉시	(8%) 즉시, 3년, 5년	(0~6.5%) 즉시, 3년, 5년, 10년
석유화학	o 합성수지	(6.5%) 즉시, 3년, 5년	(6.5%) 즉시, 3년	(6.5%) 즉시, 3년, 5년, 10년	(6.5%) 즉시, 3년, 5년, 10년
	o 합성고무	(6.5%) 즉시, 3년, 5년, 7년	(0%) 즉시	(6.5%) 즉시, 5년, 10년	(0%) 즉시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o 합판	(8~12%) 5년, 7년	(6~10%) 3년	(8~12%) 10년	(3~8%) 10년
	o 섬유판	(8%) 5년, 7년	(7%) 3년	(8%) 10년	(3.9~6%) 10년
	o 파티클보드	(8%) 5년, 7년	(7%) 3년	(8%) 10년	(0%) 즉시
기타	o 구두(드레스화)	(13%) 즉시	(17%) 즉시	(13%) 즉시	(0~55.3%) 즉시, 12(비)
	o 가죽제가방	(8%) 즉시, 3년	(2.7~9.7%) 즉시, 3년	(8%) 즉시	(8~10%) 즉시
	o 복사기	(8%) 즉시	(3%) 즉시, (6%) 3년	(8%) 즉시	(0~3.7%) 즉시
	o 서류절단기	(8%) 즉시	(2.2%) 즉시	(8%) 즉시	(0~2.6%) 즉시



2) 농·수산물 양허

가. 농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가) 양측 양허결과

- 양측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
 - 우리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10년 초과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 확보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

양측 농산물 양허수준 : 한·미 FTA와의 비교

양허 유형	한-EU FTA				한미 FTA			
	한국 양허		EU 양허		한국 양허		미국 양허	
	품목(%)	수입액 (%)	품목(%)	수입액 (%)	품목(%)	수입액 (%)	품목(%)	수입액 (%)
즉시(A)	42.1%	19.5%	91.8%	88.3%	38.1%	55.2%	58.7%	81.5%
2-3년 (B)	1.2%	17.9%	0.5%	0.9%	0.4%	0.2%	0.6%	0.1%
3년내 (A)+(B)	43.3%	37.4%	92.3%	89.2%	38.5%	55.4%	59.3%	81.6%
5년(C)	19.2%	27.9%	5.8%	10.3%	20.7%	11.6%	22.1%	2.1%
5년내 (A)+(B)+(C)	62.5%	65.3%	98.1%	99.5%	59.2%	67.0%	81.4%	83.7%
6-7년	3.3%	4.1%			4.3%	4.4%	5.1%	14.2%
10년	19.9%	21.9%			23.3%	4.7%	9.9%	2.1%
10년초과	11.5%	8.5%			12.1%	23.0%	3.6%	0.0%
양허제외/현행관세	2.8%	0.2%	1.9%	0.5%	1.1%	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나. 우리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도입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

-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 현행관세유지
-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 계절관세 】 우리나라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 세번 분리 】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

- 사과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3년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0년간 세이프가드)
- 배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농산물 세이프가드 】 수입이 일정수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 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 EU측 주요 관심품목인 돼지고기, 낙농제품에서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

【 돼지고기 】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차등 양허

- 냉동 삼겹살 : 10년, 냉동 기타부위 : 5년 관세철폐
-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부위 : 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구분	관세율	품목명	수입액 (천불)	시장점유율		양허내용	
				EU	미국	한-EU	한-미
냉동	25%	삼겹살	183,159	77.4%	0.7%	10년	2014.1.1
		기 타	96,784	34.1%	32.8%	5년	2014.1.1
냉장	22.5%	삼겹살	703	3.2%	72.7%	10년+ASG	10년+ASG
		기 타	41	0.5%	72.8%	10년+ASG	10년+ASG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임

【 낙농제품 】 양허기간 장기화

- 전·탈지 분유 : 현행관세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 치즈 : 15년 관세철폐 및 수입쿼타 제공

구분	관세율(%)	수입액(천불)	양허단계
치즈	36	20,238	15년+TRQ
유장	49.5	9,616	10년+TRQ
전·탈지분유	89-176	2,738	TRQ
조제분유	36-40	2,566	10년+TRQ
버터	89	972	10년+TRQ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임

- 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 포도주, 홍차, 커피, 아몬드, 파스타 등은 즉시 철폐

우리 농산물 양허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수입액 (천불)	비중	주요 품목
양허제외	16	1.1%	2,713	0.2%	쌀
현행관세	25	1.7%	16	0.0%	감귤, 고추, 마늘, 양파(신선, 냉장, 건조), 감자(신선, 냉장), 흑설탕, 대두, 보리(겉보리, 쌀보리), 인삼(미삼, 분삼, 수삼, 잡삼)
현행+TRQ	12	0.8%	2,822	0.2%	전탈지 분유, 연유, 천연꿀
계절+TRQ	1	0.1%	322	0.0%	오렌지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수입액 (천불)	비중	주요 품목
계절관세	1	0.1%	0	0.0%	포도
15+TRQ	6	0.4%	25,505	1.9%	치즈, 보리(맥주맥, 맥아)
12+TRQ	6	0.4%	44,426	3.3%	보조사료, 변성전분
10+TRQ	11	0.8%	13,154	1.0%	버터, 조제분유, 유장(식용)
20	2	0.1%	0	0.0%	사과(후지), 배(동양배)
18	7	0.5%	13	0.0%	참기름, 참깨, 땅콩, 녹차, 생강
16	1	0.1%	145	0.0%	설탕(백설탕)
15	90	6.2%	24,809	1.8%	육우, 젓소, 쇠고기, 계란, 우유, 표고버섯, 송이버섯 (조제저장처리), 주정, 메밀, 전분(감자, 고구마, 매니옥, 옥수수 등), 사료용 근채류, 녹두, 녹용, 녹각, 대추, 밤, 잣, 호도(미탈각), 키위, 인삼류(홍삼, 홍삼엑스), 혼합조미료 등
13	27	1.9%	17,169	1.3%	닭고기(냉동가슴, 냉동날개), 오리고기, 난황, 고구마, 옥수수(팝콘용), 스위트콘(건조), 대추(냉동) 등
12	16	1.1%	148	0.0%	고사리, 들기름, 송이버섯(냉동, 건조), 양파(냉동), 멜론, 수박, 혼합주스(포도) 등
10	275	19.0%	285,694	20.9%	돼지고기(냉동 삼겹살, 냉장 삼겹살·목살·갈비), 양고기, 혼합분유, 발효유, 마요네즈, 누룩, 앞담배, 감, 강낭콩, 수수(종자용), 쌀 배아, 양배추, 느타리버섯, 팥이버섯, 당근, 무(신선, 냉장), 들깨, 복숭아, 망고, 파인애플, 매실, 과일주스(딸기, 복숭아 등), 메주, 춘장, 인조꿀, 레몬, 로얄제리 등
7	45	3.1%	43,148	3.2%	과일주스(레몬 등), 잼, 맥주, 밀, 무화과, 아이스크림, 살구(신선), 죽순, 파(건조), 칠면조고기, 토마토(신선, 냉장) 등
6	3	0.2%	13,254	1.0%	호도(탈각)
5	278	19.2%	380,487	27.9%	데킬라, 보드카, 브랜디, 초코렛, 사탕, 비스킷, 인스턴트커피, 식빵, 돼지고기(족, 밀폐용기용 등), 소시지, 배추, 양배추, 양송이, 옥수수(종자용), 감자 (냉동, 건조), 완두콩, 팥, 녹두, 카레, 고추장, 간장, 과일주스(라임, 레몬 등), 바나나, 그레이프프루트, 올리브(조제저장처리), 김치, 두부, 콩 등
3	14	1.0%	243,909	17.9%	밀가루, 마가린, 오렌지주스(냉동), 스카치 위스키, 소프트닝 등
2	3	0.2%	2	0.0%	레몬, 자두, 아보카도
즉시철폐	610	42.1%	266,079	19.5%	홍차, 커피(생두), 포도주, 코코넛, 아몬드, 코코야조제품, 파스타, 돼지비계, 가죽(소, 뱀, 악어 등), 식물성유지(팜유, 베르가못유, 자스민유 등), 올리브, 토마토페이스트, 장미, 국화, 종자(잔디 등), 향신료(샤프란, 강황 등)
총합계	1,449	100.0%	1,363,816	100.0%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임



다. EU측 농산물 양허 주요내용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EU측은 품목수 기준 98.1%, 한국 수입액(우리의 대EU 수출액) 기준 99.5%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완전 철폐

EU측 농산물 양허

양허 유형	품목수	비중	대EU 수출액 (천불)	비중	주요 품목
즉시	1,896	91.8%	45,333	88.3%	면류, 돼지고기, 닭고기, 아이스크림, 맥주, 인조꿀, 녹차, 화훼류, 비스킷, 음료, 간장 등
3년	10	0.5%	443	0.9%	꽃양배추, 샐러리, 완두, 콩 등
5년	119	5.8%	5,309	10.3%	쇠고기, 마늘, 고추류, 천연꿀, 덱스트린, 오렌지, 감귤, 등
양허제외	39	1.9%	249	0.5%	쌀
합계	2,064	100.0%	51,333	100.0%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임

** 시장진입가격제도 품목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
 - EU측 품목수 기준 91.8%, 대EU수출액 기준 88.3%에 해당하는 농산물 관세가 FTA 발효즉시 철폐
 - 음료(0-33.6%), 면류(복합세), 간장(7.7%), 비스킷(복합세) 등
- EU측은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해 예외적 취급
 -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정해 동등한 수준의 예외적 취급을 설정
 - 쌀 및 쌀 관련 제품(39개 세번, 우리 16개 세번에 상응)은 우리와 동일하게 양허 제외
 - 품목수 기준 1.9%, 대EU 수출액 기준 0.5%

- 일부 채소 및 과일 품목(16개 세번)의 경우,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
 - 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자두 등
 - ※ 시장진입가격제도 : 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 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

대EU 수출 100만불 이상 품목 양허 결과

HS 8단위	품목명	관세율	대EU 수출액(\$)	EU 양허
19023010	파스타 (속을 채운 것)	6.4 + 24.6 €/100 kg/net	4,647,163	0
22083052	위스키(기타)	0	3,100,678	0
24012010	잎담배	18.4 MIN 22 €/100 kg/net MAX 24 €/100 kg/net	2,857,828	5년
13023900	식물성액즙(기타)	0	2,536,186	0
19023090	파스타(기타)	6.4 + 9.7 €/100 kg/net	2,379,042	0
24012020	잎담배	18.4 MIN 22 €/100 kg/net MAX 24 €/100 kg/net	2,152,499	5년
52029900	면(기타)	0	2,074,076	0
35030010	젤라틴	7.7	1,651,525	0
12122000	김	0	1,494,884	0
22083058	위스키(기타)	0	1,409,191	0
52030000	면(기타)	0	1,250,254	0
05080000	기타공예품	0	1,242,393	0
22029010	기타음료	9.6	1,209,793	0
06029099	난초	6.5	1,208,907	0

* 품목은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임

나. 수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가) 양측 양허결과

- 양측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 주요 수산물의 민감성 보호에 중점을 두되, 우리의 수출여건 개선 노력도 병행
- 우리는 민감도별로 철폐기간을 차별화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
- EU측은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모든 품목의 관세가 5년내 완전 철폐

양축 수산물 양허수준 : 한·미 FTA와의 비교

양허 유형	한-EU FTA				한-미 FTA			
	한국 양허		EU 양허		한국 양허		미국 양허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즉시 (A)	12.3%	6.8%	40.8%	25.3%	14.2%	1.5%	72.8%	82.5%
3년 (B)	31.9%	20.3%	31.8%	69.7%	40.7%	37.4%	7.2%	5.1%
3년내 (A)+(B)	44.2%	27.1%	72.6%	95.0%	54.9%	38.9%	80.0%	87.5%
5년 (C)	23.0%	50.9%	27.4%	5.0%	7.6%	25.9%	3.6%	0.1%
5년내 (A)+(B)+(C)	67.2%	78.0%	100.0%	100.0%	62.5%	64.8%	83.6%	87.7%
7년	4.4%	0.2%			0.2%	0.0%		
10년	27.2%	6.2%			36.3%	30.2%	16.4%	12.3%
10년초과	0.5%	15.4%			1.0%	5.0%		
현행관세	0.7%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우리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 우리는 주요 민감품목에서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
 - 냉동 오징어, 냉동 명태, 냉동 민어 : 현행관세 유지
 - 냉동 고등어, 냉동 기타넙치 : 12년 철폐

- 냉동 볼락, 냉동 가자미, 게살, 꽃게 : 10년 철폐
-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 즉시 철폐에서 10년까지 차별화 하여 양허
 -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또는 국내 영향이 미미한 품목의 경우 관세를 즉시 철폐(품목수 기준 12.3%, 수입액 기준 6.8%)

우리 수산물 양허 개요

양허유형	품목수	비 중	대EU 수입액 (천불)	비 중	주요 품목
즉시	50	12.3%	5,606	6.8%	종패, 패각류, 브라인 슈림프 알, 경유 등
3년	130	31.9%	16,734	20.3%	이빨고기(냉동), 캐비아, 어류 웨이스트, 밀폐 갑각류, 밀폐 연체류 등
5년	94	23.0%	42,021	50.9%	골뱅이, 굴(염장), 어란, 밀폐 어류, 일부 해조류, 어분 등
7년	18	4.4%	119	0.2%	먹장어, 복어, 전복, 홍합 등
10년	111	27.2%	5,152	6.2%	가자미(냉동), 서대(냉동), 민대구(냉동), 전갱이(냉동), 볼락(냉동), 홍어(냉동), 가오리(냉동), 게살, 꽃게, 뱀장어(활어) 등
12년	1	0.25%	9,824	11.9%	고등어(냉동)
12년+TRQ	1	0.25%	2,890	3.5%	기타 납치(냉동)
현행관세유지	3	0.7%	194	0.2%	민어(냉동),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총합계	408	100	82,540	100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임



대EU수입 100만불 이상 주요 수산물 양허결과

HS 10 단위	품목명	관세율	대 EU 수입액 (\$)	한국 양허
1605909030	골뱅이(조제)	20	31,490,527	5년
0304205000	참다랑어(필렛)	10	11,448,065	3년
0303740000	고등어(냉동)	10	9,823,662	12년(비선형)
2301201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5	6,815,050	5년
0303450000	참다랑어(냉동)	10	4,663,834	0
0303390000	냉동 넙치	10	2,890,345	12년(비선형)+TRQ
1605909090	기타연체	20	2,505,640	5년
0303799070	불낙(냉동)	10	2,360,245	10년(비선형)
0303799098	이빨고기(냉동)	10	2,105,457	3년

* 품목은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임

다) EU측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 EU는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모든 수산물 품목이 5년내 완전 개방
- 우리의 대EU 수출 주요 수산물(품목수 기준 72.6%, 대EU수출액 기준 95%)의 관세가 즉시철폐 또는 3년내 철폐
 - 냉동 황다랑어(조제용), 냉동 새우, 냉동 가다랑어, 냉동 갑오징어, 냉동 대구 등 : 즉시철폐
 - 연육 조제품, 냉동 기타조개, 냉동 꼴뚜기, 냉동 문어 등 : 3년 철폐

EU측 수산물 양허 개요

양허 유형	품목수	비중	수출액 (천불)	비중	주요 품목
즉시	155	40.8%	21,585	25.3%	냉동 새우, 냉동 갑오징어, 냉동 황다랑어(조제용), 냉동 가다랑어 등
3년	121	31.8%	59,445	69.7%	다랑어, 오징어, 민어, 생선묵, 기타 냉동 어류, 조제 저장 바지락 등
5년	104	27.4%	4,272	5.0%	가자미, 넙치, 기타 수산가공품 등
총합계	380	100.0%	85,302	100.0%	

우리의 대EU 수출 100만불 이상 수산물 EU측 양허

HS	품목	관세율	대EU 수출 (\$)	EU 양허
16042005	연육 조제품	20	14,502,969	3년
03079913	냉동 기타조개	8	8,875,131	3년
03074938	냉동 오징어	6	8,759,330	3년
03037998	냉동 기타어류	15	8,494,967	3년
03034212	냉동 황다랑어(조제품)	20	4,510,181	0
03079911	냉동 오징어	8	3,728,334	3년
03074931	냉동 꼴뚜기	6	3,377,096	3년
16059030	저장 또는 저장처리 기타 연체	20	3,258,912	3년
03061350	냉동 새우	12	3,162,220	0
16051000	저장 또는 저장처리한 계	8	2,612,017	0
03034311	냉동 가다랑어	22	2,324,542	0
03074935	냉동 꼴뚜기	6	2,194,807	3년
03074911	냉동 갑오징어	8	2,120,831	0
03075910	냉동 문어	8	2,120,203	3년
03033970	냉동 넙치	15	1,932,548	5년
03061380	냉동 새우	12	1,670,456	0
03036090	냉동 대구	12	1,508,137	0
03074918	냉동 갑오징어	8	1,446,886	0

* 품목은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임



참고 우리 주요 농산물 품목별 양허

◆ 식량작물

품목	양허 내용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나물용 대두의 현행관세(487%) 유지를 조건으로, 채유 및 박용은 5년 철폐 - 콩나물용(487%) : 현행관세 유지 - 채유 및 박용(487%) : 5년 철폐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및 냉장 감자의 현행관세(304%) 유지를 조건으로, 종자용 감자는 10년 철폐, 냉동 감자는 5년 철폐 - 신선 및 냉장(304%) : 현행관세 유지 - 종자용(27%) : 10년 철폐 - 냉동(27%) : 5년 철폐
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보리 및 쌀보리를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맥주맥 및 맥아는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겉보리(324%) 및 쌀보리(299.7%) : 현행관세유지 - 맥아(269%)+맥주맥(513%) :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10,000톤(1년차)~17,164톤(15년차)
옥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과 종자용을 구분 철폐 - 팝콘용(630%) : 13년 철폐 - 종자용(328%) : 5년 철폐
전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또는 12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감자전분(455%) :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 옥수수전분(226%), 매니옥전분(455%), 고구마전분(241.2%) : 15년 철폐 - 변성전분(385.7%) : 12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28,000톤(1년차)~44,337톤(12년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철폐 - 녹두(607.5%), 팥(420.8%), 메밀(256.1%), 대추(611.5%), 밤(219.4%), 잣(566.8%), 발효주정(270%), 타피오카(887.4%)

◆ 육 류

품목	양허 내용
쇠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한 6개 세번(40%) : 15년 철폐, 동 기간 중 세이프가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9,900톤(1년차) → 13,063톤(15년차, 매년 2% 증량) - 세이프가드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 → (6~10년차) 실행세율의 75% → (11~15년차) 실행세율의 60% ○ 육우(40%)와 식용설육(족·꼬리 등)(18%), 쇠고기 가공품(72%) 등 : 15년 철폐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 삼겹살(25%) : 10년 철폐 ○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갈비·목살 등)(22.5%) : 10년 철폐, 동 기간 중 세이프가드 적용 ○ 기타 냉동육 및 기타 냉장육 : 5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살, 어깨살, 갈비·목살(25%) * 냉장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살, 어깨살(22.5%) ○ 냉동 족(18%), 돼지고기 밀폐가공품(30%) : 6년 ○ 식용설육(18~30%), 소시지(30%), 기타 돼지고기 가공품(27~30%) : 5년 철폐
닭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한 2개 세번 : 13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 가슴살 및 날개(20%) ○ 냉장육(18%), 냉동(다리)(20~22.5%) : 10년 철폐 ○ 삼계탕(30%) : 10년 철폐
계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란(41.6%), 전란액(27%) : 15년 철폐 ○ 난황(27%) : 13년 철폐 ○ 종란(27%) : 10년 철폐
기타 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고기(18~22.5%) : 냉장육 10년 철폐, 냉동육 13년 철폐 ○ 산양·면양고기(22.5%) : 10년 철폐 ○ 칠면조고기(18%) : 7년 철폐 ○ 녹용·녹각(20%) : 15년 철폐



◆ 낙농품, 꿀, 사료

품목	양허 내용
분유 연유 발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지분유·전지분유(176%)·연유(89%) : 현행관세 - 무관세쿼타 제공 1천톤(매년 3% 증량) ○ 혼합분유(36%) : 10년 철폐 ○ 조제분유(36~40%)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제공 450톤(매년 3% 증량) ○ 발효유(36%) : 10년 철폐
치즈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다치즈: 10년 철폐 ○ 체다 이외의 치즈 : 15년 철폐 ○ 치즈 무관세쿼타 제공 4,560톤(매년 3% 증량)
밀크와 크림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5년 철폐 - 지방함량 6% 이하 : 15년 철폐 -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 13년 철폐 - 냉동크림 : 10년 철폐
버터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350톤(매년 3% 증량)
유장 (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3,350톤(매년 3% 증량) ○ 사료용 : 즉시 철폐
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꿀(243%) : 현행관세, 무관세쿼타 50톤(매년 3% 증량) ○ 인조꿀(243%), 로얄제리(8%), 벌꿀조제품(8%) : 10년 철폐
사료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용 근채류(100.5%) : 15년 철폐 ○ 보조사료(50.6%) : 12년 철폐 - 무관세쿼타 5,500톤(매년 3% 증량) ○ 사료용 옥수수(328%) : 5년 철폐

◆ 과일 · 과채류

품목	양허 내용
감귤류 (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온주밀감) : 현행관세(144%) 유지 ○ 맨더린, 클레멘타인 : 15년 철폐
오렌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 성출하기(9~2월) : 현행관세(50%) 유지 - 무관세쿼타 제공: 20톤(1년차) → 60톤(11년차) (이후 고정) ○ 감귤 비출하기(3~8월) : 관세 30%에서 시작하여 7년철폐
사과(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지 계통 품종 : 20년 철폐, 세이프가드 23년 적용 ○ 기타 품종 : 10년 철폐, 세이프가드 10년 적용
배(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양배 품종 : 20년 철폐 ○ 기타 품종 : 10년 철폐
포도(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출하기(5월~10.15) : 17년 철폐 ○ 비출하기(10.16~4월) : 관세 24%에서 시작하여 5년 철폐
키위(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철폐
복숭아, 단감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철폐
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45%) : 10~12년 철폐 * 초본류 딸기 : 10년 철폐, 나무딸기 : 12년 철폐 ○ 저장(30~45%) : 즉시~7년 철폐 * 일시저장처리 : 즉시 철폐, 조제저장처리 : 7년 철폐 ○ 냉동(30%) : 5년 철폐
토마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및 냉장(45%) : 7년 철폐 ○ 토마토 주스(30%), 소스 : 5년 철폐 ○ 토마토 케첩(8%), 페이스트(5%) : 즉시 철폐
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및 냉장(27%) : 즉시 철폐 ○ 일시저장처리(30%) : 10년 철폐
호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및 냉장(27%) : 즉시 철폐 ○ 건조(30%) : 10년 철폐
가지(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철폐
수박(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철폐
멜론(참외 포함)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철폐 (껍질은 즉시 철폐)



◆ 양념채소, 인삼, 특작

품목	양허 내용
고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4개 세번(270%) : 현행관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및 냉장 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 등 ○ 냉동고추(27%) : 15년 철폐
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4개 세번(360%) : 현행관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및 냉장 마늘, 일시저장처리 마늘, 건조마늘 ○ 냉동마늘(27%) : 15년 철폐 ○ 조제저장처리 마늘(30%) : 10년 철폐
양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및 건조 양파(135%) : 현행관세 유지 ○ 냉동양파(27%) : 12년 철폐 ○ 조제저장처리 양파(30%) : 5년 철폐
생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생강(377.3%) : 18년 철폐 ○ 설탕저장처리 생강(30%) : 5년 철폐
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 파(30%) : 7년 철폐 ○ 조제저장처리 쪽파(30%) : 5년 철폐 ○ 쪽파기타파속채소(27%) : 즉시 철폐
인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7개 품목(222.8~754.3%) : 현행관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삼 및 홍삼, 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삼) ○ 홍삼가공품 6개 품목(754.3%) : 15년 철폐 및 세이프가드 18년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삼엑스, 홍삼엑스분, 타블렛 및 캡슐 등 ○ 인삼가공품 2개 품목(20%) : 13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엑스, 인삼엑스분 등 ○ 인삼 관련 조제식료품 : 10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차, 홍삼차 등
땅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콩(230.5%) : 18년 철폐 ○ 땅콩 조제품(50~63.9%) : 10년 철폐
참깨, 참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깨(630%) : 18년 철폐 ○ 참기름(630%) : 18년 철폐

◆ **업근채류**

품목	양허 내용
당근(30%)	○ 5년 철폐 (건조는 7년, 일시저장처리 10년)
무(30%)	○ 10년 철폐 (건조는 7년)
배추(27%)	○ 5년 철폐 (케일 등은 즉시)
양배추(27~30%)	○ 즉시 철폐 (건조 양배추는 10년)
기타채소	○ 채소즙스 : 5년 철폐 ○ 채소류 혼합물 : 즉시 철폐 ○ 냉동·일시저장처리 : 즉시 철폐 ○ 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 5년 철폐 ○ 건조는 7년, 신선/냉장은 10년 철폐
기타	○ 토란줄기(건조) 10년 철폐, 고구마줄기(건조) 7년, 칩줄기 및 뿌리 5년, 연뿌리(설탕저장처리) 5년

◆ **가공식품**

품목	양허 내용
설탕(40%)	○ 향미 또는 착색제가 가미된 것 : 현행관세 유지 ○ 기타 : 16년 철폐, 세이프가드 20년간 적용
대두유(5.4%), 옥수수유(8%)	○ 대두유 : 조유는 10년, 정제유는 5년 철폐 ○ 옥수수유 : 5년 철폐
장류	○ 된장, 춘장(8%) : 10년 철폐 ○ 간장(8%), 고추장(45%), 기타장류(쌈장,청국장) : 5년 철폐
소스류	○ 혼합조미료(45%) : 15년 철폐 ○ 인스턴트 카레(45%) : 5년 철폐 ○ 마요네즈(8%) : 10년 철폐 ○ 겨자(8%) : 즉시 철폐
빵류, 기타식품류	○ 식빵, 건빵 등 빵류 : 5년 철폐 ○ 커피(생두), 홍차, 라면, 파스타, 아몬드 등 : 즉시 철폐
주류	○ 포도주(15%) : 즉시 철폐 ○ 맥주(30%) : 7년 철폐 ○ 스카치, 버본, 아이리쉬 위스키(20%) : 3년 철폐 ○ 데킬라, 보드카, 브랜디(20%) : 5년 철폐



참고 우리의 대EU 주요 수입품목 양허내용

■ 대EU 수입 천만불 이상 품목 양허내용

HS 10단위	품목명	관세율	대EU 수입액 (\$)	한국 양허
2208301000	스카치 위스키	20	219,634,984	3년
0203291000	냉동 삼겹살	25	183,159,042	10년
0203299000	냉동 기타돼지	25	96,783,555	5년
1509100000	버진 올리브오일	8	68,669,209	5년
3505105000	변성전분	385.7	31,711,841	12년+TRQ+ASG
2204211000	붉은 포도주	15	30,374,983	0
0404900000	혼합분유	36	29,809,825	10년
4301100000	밍크모피	3	23,862,569	0
2106909020	버터 조제품	8	22,345,918	7년
1515909090	기타식물성유지	8	21,684,028	5년
1108130000	감자곡분	455	21,135,899	15년+ASG
2106909099	로얄제리	8	19,356,233	3년
2401103000	잎담배	20	18,630,603	10년
1302199099	식물성액즙(기타)	8	18,071,932	0
0207141010	냉동 닭다리	20	14,691,012	10년
0207141030	냉동 닭날개	20	13,995,679	13년
1901902000	혼합분유	36	13,856,483	10년
1806901000	초코렛	8	13,798,225	5년
0406101000	치즈	36	11,882,123	15년+TRQ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	8	11,332,759	5년
2208201000	꼬냇	15	11,216,372	5년
2106901010	콜라 베이스	8	11,070,675	0
5201009050	면	0	10,771,872	0
1702909000	기타당류	8	10,650,740	5년
1509900000	기타식물성유지	8	10,299,859	0
1704902090	사탕	8	10,269,447	5년
3501901000	단백질류	8	10,202,020	5년

참고 우리 주요 품목별 수입쿼터 관리방식

No.	품목	관리주체	관리방식
1	탈·전지, 연유	농수산물유통공사	- 분기별 공매 (3/6/9/12월)
2	유장(식용)	한국유가공협회	- 실수요자 배정 (과거 및 신규 수입자)
3	치즈	한국유가공협회	- 실수요자 배정 (과거 및 신규 수입자)
4	조제분유	한국유가공협회	- 실수요자 배정 (과거 및 신규 수입자)
5	버터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입권 공매
6	천연꿀	농수산물유통공사	- 분기별 공매 (3/6/9/12월)
7	보조사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 실수요자 배정 (과거 및 신규 수입자)
8	오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 10년차까지 수입권공매 - 11년차부터 최근 수입실적기준 배정
9	맥주맥, 맥아	농수산물유통공사	- 실수요자 배정 (수요자 신청순 배정)
10	변성전분	농수산물유통공사	- 실수요자 배정 (수요자 신청순 배정)
11	기타넵치(냉동)	-	- 선착순 방식



참고 우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

ID	품목	관세철폐기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기간	초기연도 발동기준
1	쇠고기	15년	15년	9,900톤
2	돼지고기	10년	10년	163톤
3	사과	후지사과 20년 기타품종 10년	23년 10년	7,500톤
4	맥주맥맥아	15년	15년	14,000톤
5	감자전분	15년	15년	37,900톤
6	인삼	15년	18년	300톤
7	설탕	16년	20년	220톤
8	발효주정	15년	15년	95톤
9	변성전분	12년	12년	37,900톤

참고 한·EU 對 한·미 주요 농산물 양허 비교

() : 관세율%

품목		한·EU FTA	한·미 FTA
쌀	○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양허제외	양허제외
	○ 겉보리(324%), 쌀보리(299.7%)	현행관세유지	15년+ASG+TRQ
보리	○ 맥아(269%), 맥주맥(513%)	15년+ASG+TRQ	15년+ASG+TRQ
	○ 팥콩용 옥수수(630%)	13년	7년+ASG
옥수수	○ 종자용 옥수수(328%)	5년	5년
	○ 감자 전분(455%)	15년+ASG	15년+ASG
전분	○ 매니옥 전분(455%), 고구마 전분(241.2%)	15년	15년+ASG
	○ 변성 전분(385.7%)	12년+ASG+TRQ	12년+ASG+TRQ
	○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40%)	15년+ASG	15년+ASG
쇠고기	○ 육유(40%), 식용설육(18%), 쇠고기 가공품(72%)	15년	15년
	○ 냉동 삼겹살(25%)	10년	2014.1.1
돼지고기	○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10년+ASG	10년+ASG
	○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 (30%)	6년	2014.1.1
	○ 냉동 기타부위(25%)	5년	2014.1.1
	○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13년	12년
닭고기	○ 절단하지 않은 닭(18~20%)	12년	12년
	○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 (30%)	10년	10년
	○ 탈자전지분유(176%), 연유(89%)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분유·연유·발효유	○ 혼합분유(36%), 발효유(36%)	10년	10년
	○ 조제분유(36~40%)	10년+TRQ	10년+TRQ
	○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15년+TRQ	15년+TRQ
치즈	○ 체다 치즈(36%)	10년+TRQ	10년+TRQ
	○ 버터(89%)	10년+TRQ	10년+TRQ
버터	○ 천연꿀(243%)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 인조꿀(243%)	10년	10년
꿀	○ 보조사료(50.6%)	12년+TRQ	12년+TRQ
	○ 사료용 옥수수(328%)	5년	즉시철폐



품목		한-EU FTA	한-미 FTA
감귤류·오렌지	○ 온주감귤(144%)	현행관세유지	15년
	○ 맨더린, 탠저린(144%)	15년	15년
	○ 오렌지(50%)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사과·배·포도	○ 사과(45%)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 배(45%)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 포도(45%)	계절관세	계절관세
고추	○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현행관세유지	15년+ASG
	○ 냉동고추(27%)	15년	15년
마늘	○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현행관세유지	15년+ASG
	○ 냉동마늘(27%)	15년	15년
양파	○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현행관세유지	15년+ASG
	○ 냉동 양파(27%)	12년	12년
참깨, 참기름	○ 참깨(630%)	18년	15년+ASG
	○ 참기름(630%)	18년	15년+ASG
설탕	○ 원당(3%)	즉시철폐	즉시철폐
	○ 백설탕(40%)	16년+ASG	16년+ASG
	○ 착색·착향된 설탕(40%)	현행관세유지	16년
인삼류	○ 수삼, 홍삼, 백삼 등 뿌리삼류 7개 세번(222.8~754.3%)	현행관세유지	18년+ASG
	○ 기타 인삼 가공품 등	10년~15년+ASG	10년~15년+ASG
주류	○ 포도주(15%)	즉시철폐	즉시철폐
	○ 맥주(30%)	7년	7년
	○ 스카치 위스키(20%)	3년	5년
	○ 보드카(20%)	5년	5년
차류	○ 커피(생두)(2%)	즉시철폐	즉시철폐
	○ 홍차(40%)	즉시철폐	5년
	○ 녹차(513.6%)	18년	15년+ASG
면류	○ 라면(8%), 파스타(8%)	즉시철폐	즉시철폐

3-1 전기전자 비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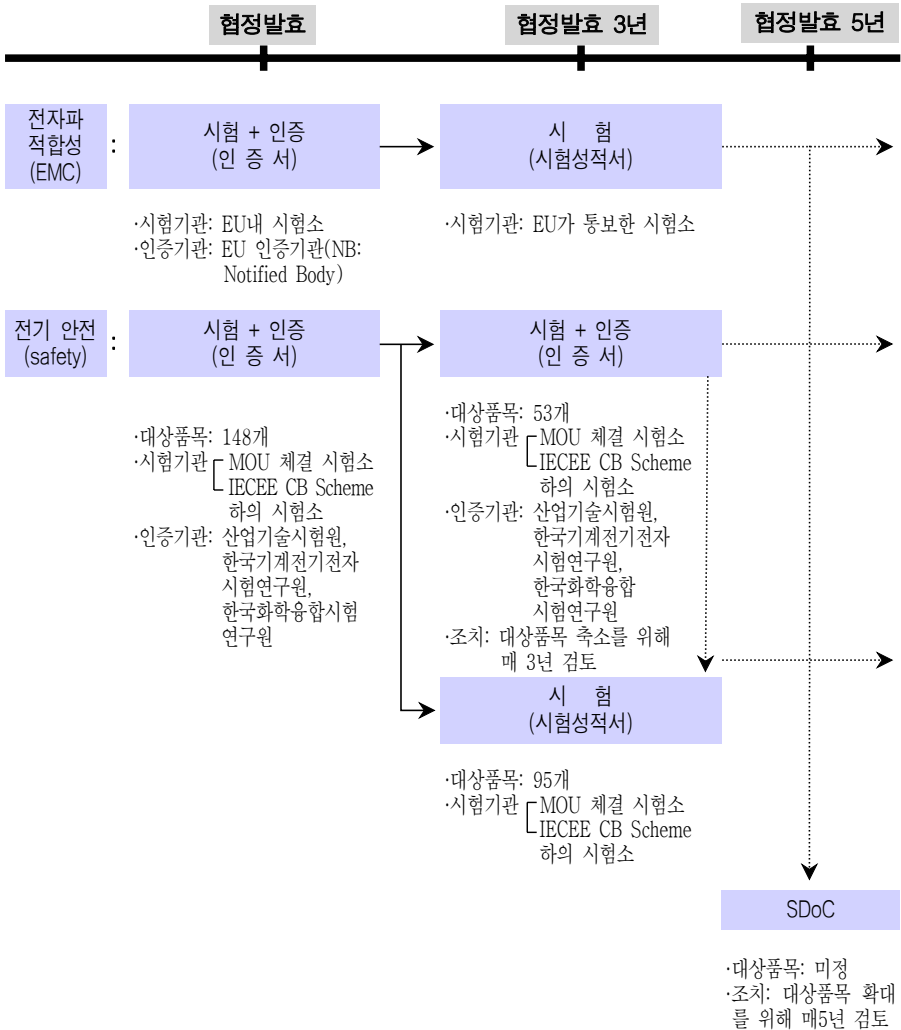
1. 개요

-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충족시켜야 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 EU측은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방식을 적용하고 우리는 현행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합의함.
 - EU측은 전자파 적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기안전(safety) 모두 SDoC를 적용
 - 우리는 EMC와 전기안전을 구분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 협정발효 3년 이내에 인증이 필요없는 간소화된 적합성 평가절차를 도입
 - EMC의 경우 EU측이 통보한 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수용(예외품목 없음)
 - 전기안전의 경우 (i) 우리 인증기관과 MOU를 체결한 시험소의 시험결과 또는 (ii) IECEE CB Scheme(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에 따른 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없이 수용(자율안전확인제도)
 - 단, 현재 규제하고 있는 148개 품목군 중에서 인간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53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3년 이후에도 인증을 요구할 수 있음.
- 자율안전확인제도 예외품목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53개 예외품목군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후 매3년 마다 위해도 평가를 실시



- 우리는 협정 발효 5년 이내에 일부 품목에 대해 SDoC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EU와 협의

EMC, 전기안전에 대한 우리 적합성 평가절차



-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 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공급자 스스로가 시험, 확인한 후 판매하는 방식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전기통신분야 규격을 통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기구
- IECEE CB Schem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국제 전기기기 인증제도) :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제공인인증제도로써, 통일된 절차와 방법(IEC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회원국간 상호 수용

2. 상세 내용

1) 부속서 적용범위

- 유·무선 통신기기를 포함하여, 양측법이 규율하고 있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을 부속서의 적용범위로 규정(부속서 2-나(이하 부속서) 제1조 제2항, 부록 2-나-1의 제1항, 제2항).
 - 적합성 평가절차는 전기안전(safety) 및 전자파 적합성(EMC)을 대상
 - EU측은 (i) EMC Directive 대상품목, (ii) Low Voltage Directive(저전압지침) 대상품목, (iii) R&TTE Directive(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Directive: 유무선 통신기기지침)의 EMC, 전기안전 대상품목을 적용범위로 함.
 - 우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대상품목을 적용범위로 함.
 - 우리법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열거하고 있는 체제(positive list)임을 감안, 현재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전기용품에 대한 미래 규제권도 갖고 있음을 확인(각주3)



2) 적합성 평가절차

- EU측은 전기전자제품의 EMC, 전기안전 구분없이 협정문 발효즉시 SDoC방식을 적용(부속서 제3조, 제4조제1항, 부록 2-나-2의 제1항)
- 우리는 3년의 전환기간을 설정하고 전환기간 이후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인증이 필요 없는 간소화된 적합성 평가절차를 도입(부속서 제3조,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부록 2-나-2의 제2항)

가. 전환기간 동안의 적합성 평가절차

- EMC의 경우, EU내 인증기관의 인증을 수용
- 전기안전의 경우, (i) 우리 인증기관과 시험성적서 수용에 대한 MOU를 체결한 EU내 시험소의 시험결과 또는 (ii) IECEE CB Scheme에 따른 CB 시험소의 시험결과(국가인증기관의 인증필요)를 바탕으로 우리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

나. 전환기간 이후의 적합성 평가절차

- EMC의 경우, EU측이 통보한 시험소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수용하며 이에 대한 인증은 불필요
 - 인증 요구와 같은 사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관리를 위한 서류(시험성적서 사본, 일반적인 제품설명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전기안전의 경우, (i) 우리 인증기관과 시험성적서 수용에 대한 MOU를 체결한 EU내 시험소의 시험결과 또는 (ii) IECEE CB Scheme에 따른 CB 시험소의 시험결과(국가인증기관의 인증필요)를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없이 수용 (자율안전확인제도)
- EMC의 경우, 전환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예외없이 인증이 불필요하나, 전기안전의 경우, 전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53개 품목에 대해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을 요구할 수 있음(부속서 제4조제3항, 부록2-나-3).

- 물, 전기모터 등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53개 품목을 예외품목으로 선정
 - ※ 주요 예외 품목: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전기세탁기, 전기담요, 전자레인지, 가습기, 공기청정기, 복사기, 식기세척기,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변압기 등

3) 자율안전확인제도 예외품목 축소

- 자율안전확인제도 예외품목을 축소하기 위하여 소비자 안전사고 신고 건수 및 시장판매제품 불량률 조사 등 위해도 평가를 전환기간 마지막에 실시하고 이를 그 후 매3년마다 실시(부속서 제4조제3항)
 - 위해도 평가시 해당제품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주의를 갖고 사용되었는지도 고려되어야 함.
- 위해도 평가 결과, 해당 품목에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적용할 경우 인간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이 증명되면 예외품목으로 계속 유지 가능(부속서 제4조제3항)

4)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도입 및 확대

- 우리는 협정 발효 5년 내에 일부 품목에 대해 SDoC를 도입하고 SDoC 도입 이후 매 5년마다 EU측과 SDoC 대상확대 등을 통한 기술, 행정요건 완화 가능성을 검토(부속서 제5조제2항)
 - 효과적인 사후시장감시체제(post-market surveillance) 개발을 통해서도 기술, 행정요건 완화 가능성을 검토

5) 예외 및 긴급조치

- 양측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3자 시험 또는 인증 도입 등 예외조치 가능(부속서 제6조제1항)



※ 요건 : (a) 인간의 건강 및 안전보호에 긴급한 이유 존재, (b) 조치의 도입 이유가 기술적, 과학적 정보에 기반, (c) 요건이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고 (d) 그러한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 도입되어야 함.

◦ 예외조치를 도입하기 전에 상대방에 통보하고 협의하며, 요건이 부속서에 명시된 적합성 평가절차에 따라야 하며 채택후 매3년마다 검토되어야 함.

- 해당제품이 인간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품회수(recall) 등 긴급조치가 가능하나 그러한 조치는 상대방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과 함께 통보(부속서 제6조 제2항)

6) 이행 및 협력

- 규제문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증진하고 시험성적서 상호수용을 위한 MOU 유지·확대를 위하여 양측이 긴밀히 협력(부속서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 부속서 적용대상 품목에 대해 전기안전 적합성 평가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전환기간 3년 이내에 우리 인증기관이 (i)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EU 시험소와 MOU를 체결하거나 (ii) IEC 기준과 다른 기술규정을 우리가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상품목에 대해 IECEE CB Scheme 하의 인정지위를 가진 국가인증기관이 되어야 함(부속서 제7조제3항).
- 기존 기술규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술규정을 개발하고자 할 때 상대방에 통보,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상대방의 적절한 입장을 고려(부속서 제7조제4항).

참고 IECEE CB Scheme

1. IECEE 개요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CAB(Conformity Assessment Board: 적합성평가위원회)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제공인인증제도(IECEE: 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으로 회원국간 중복시험을 방지하여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1985년에 설립
 - 통일된 절차와 방법(IEC 국제표준규격)에 따라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회원국간 상호수용
- 2009.10월 현재 52개 MB(Member Body: 1국가 1대표기관, 회원국), 66개 NCB(National Certification Body: 국가인증기관)와 293개 CBTL(CB Testing Laboratory: 시험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은 1987년 12월 가입
 - 그동안 주로 전기안전분야를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년전부터 전자파 분야와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까지 확대

2. 국내 대응 조직

- 대표기관(MB)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인증기관(NCB) : 전기안전 인증기관(KTC, KTL, KTR), KERI, NREC
5개 기관
 - ※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Korea Testing Certification
 - ※ KTL(산업기술시험원) : Korea Testing Laboratory
 - ※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Korea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 KERI(전기연구원) :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 NREC(신재생에너지센터) : New and Renewable Energy Center

- 시험소(CBTL) : KTC, KTL, KTR, KERI, 원텍, 에스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개

3. 국내 안전인증과 IECEE와의 관계

- 국내 안전인증기관이 외국의 인증기관과 시험결과 및 공장심사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전기용품안전관리법)
 -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대기관의 자격을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의하여 공인 받은 기관으로 한정

4. CB 인증서 인정현황

- 한국은 외국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시 IECEE 회원국의 CBTL이 시험하고 NCB가 인증한 CB 인증서를 수용하고 있으나, IECEE 규정에 따라 시료 등을 제출받아 시험결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 CBTL이 시험한 결과(시험성적서) 자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소관 NCB가 승인한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함(IECEE 규정).

참고 자율안전확인제도 예외품목

번호	자율안전확인제도 예외품목	영문명
1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Cables and Cord sets
2	스위치	Switches
3	기기보호용 차단기	Interceptors for electrical appliances
4	전자개폐기	Magnetic switches
5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	Capacitors and Noise filters
6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Installation accessories and connection devices
7	퓨즈 및 퓨즈홀더	Fuses and fuse holders, thermal-links
8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Power transformers and voltage regulators
9	전기청소기	Vacuum cleaners, floor treatment machines, steam cleaners, surface-cleaning appliances
10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Electric irons and press
11	식기세척기 및 건조기	Dish washers and dish driers
12	주방용전열기구	Heating appliances for kitchen
13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Washing machines and spin extractors
14	모발관리기	Appliances for hair care
15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Warming plates and Electric hot cupboards
16	주방용전동기기	Motor-operated appliances for kitchen
17	전기액체가열기기	Electric appliances for heating liquids
18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Electric blankets and mats, electric beds
19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Cauterizing machines and foot warmers
20	전기온수기	Storage water heaters and Instantaneous water heaters
21	전기냉장·냉동기기	Electric refrigerators and ice makers
22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s (using the frequencies of 300MHz - 30GHz range)
23	가정용 전동재봉기	Sewing machines for household
24	전기충전기	Battery chargers
25	전기건조기	Electric driers
26	전열기구	Heaters
27	전기맛사지기	Massage appliances



번호	자율안전확인제도 예외품목	영 문 명
28	냉방기 및 제습기	Air-conditioners and dehumidifiers
29	유체펌프	Pumps and Electric waterspouts
30	전기가열기기	Heating tools
31	사우나기기	Electric sauna appliances
32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Aquarium heaters, Air bubble generators, Fishbowls for display
33	기포발생기	Electric air bubble generators
34	전격살충기	Insect killing or repelling devices
35	전기욕조	Electric baths
36	공기청정기	Air-cleaning appliances
37	자동판매기	Dispensing appliances and vending machines (equipped with heating element or cooling device or discharge lamp or accommodation)
38	팬, 레인지후드	Electric fans, range hoods
39	화장실용 전기기기	Electric appliances for toilets and electro-motive inhalers
40	가 습 기	Humidifiers
41	전기분무기	Spray extraction appliances
42	전기소독기	Electric disinfectants (only equipped with sterilizer lamp)
43	음식물처리기	Food waste process machine
44	물수건마는기기 및 포장기기	Wet towel wrapping devices
45	전동공구	Motor-operated electric tools
46	복 사 기	Copying machines
47	직류전원장치	DC power supplies(with the rated capacity of at most 1kVA, including those used in combination with AC power)
48	무정전전원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49	코팅기(라미네이터)	Laminators
50	램프홀더(소켓)	Lamp holders
51	일반조명기구	Luminaires (general purpose luminaires)
52	안정기(램프제어장치)	Ballaster(Lamps, control gears)
53	안정기내장형램프	Self ballasted Lamps

3-2 자동차 비관세

1. 개요

■ 안전기준

- 한·EU 양측은 각각의 국내기준과 유사한 UN ECE(United Nations Economic Council for Europe) 규정과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s) 규정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 해당 국내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상응하는 UN ECE 규정 또는 GTR 규정이 있는 국내기준은 협정 발효후 5년내 해당 UN ECE 또는 GTR 규정과 조화

■ 환경기준

- 국내에 수입되는 EU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은 우리기준을 준수 하되, 연간 1만대 이하를 판매하는 소량 판매 제작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균 배출량 기준 적용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 기준은 우리 기준과 유사한 Euro 6 OBD 기준(2014년 도입)을 인정하되, 동 기준 도입 이전인 2013년 말까지 일정 대수에 대해 Euro 5 OBD 기준(2009.9월 도입)을 인정

■ 자동차 및 부품 관련 국제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

■ 자동차 작업반 설치

- 자동차 국제표준 제정기구에서의 협력과 자동차 비관세 합의 내용의 이행 감독



■ 신속분쟁해결절차 도입

UN ECE 규정
<p>안전, 환경, 에너지 및 도난방지 요건에 관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단일 표준 확립을 위한 58 협정(48개 체약국)에 근거한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기준 - 우리나라는 2004.11월 가입</p>
GTR 규정
<p>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세계기술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한 98협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자동차 기술 규정 - 우리나라는 2000.11월 가입</p>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p>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오작동 여부를 감지하고 이를 차내 계기판의 정비 지시등(engine check)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p>

2. 상세 내용

1) 적용 대상

- 통일 상품명 부호체계(HS)의 제40장(고무와 그 제품), 제84장(기계류), 제85장(전기기기), 제87장(일반 차량) 및 제94장(조명기기) 상의 모든 형태의 자동차, 시스템과 그 부품에 적용
 - 단, 트랙터, 설상차, 골프카트, 건설기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2) 규정의 수립

- WP.29를 자동차 및 부품 관련 국제표준 제정기구로 인정
 - WP.29의 표준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동 작업반에서 제정된 새 규정을 지체 없이 채택하기 위해 협력 (부속서 2-다(이하 부속서) 제2조제2항)

WP.29(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UN ECE)의 내륙교통위원회(Inland Transport Committee) 산하의 자동차 기술표준의 조화와 개발을 담당하는 작업반으로 58협정과 98협정을 관리

3) 시장 접근

가. 안전기준

- **(국제기준 인정)** 각 당사자가 국내기준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한 UN ECE 규정과 GTR 규정에 따라 제작된 차량에 대해 해당 국내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우리 안전기준 : 기존의 동등성 인정기준 26개 기준에 6개 기준을 새로 인정하여 총 32개 기준이 이에 해당(부속서 제3조)
 - 새롭게 인정한 안전기준(6개 기준) : 충돌시 연료누출방지, 범퍼 충격흡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소음방지장치, 경음기
 - ※ 협정문 부록 2-다-3 표1에서는 소음방지장치 및 경음기가 “자동차의 경적소음, 배기소음, 소음방지장치”의 한 항목으로 통합되어 있음.
 - ※ 협정문 부록 2-다-3 표1에 포함되어 있는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및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항목은 자동차 환경기준이며, “타이어”는 공산품 안전기준임.
 - 유럽 기준 : 대부분의 유럽기준(EEC 기준)이 이에 해당(부속서 제3조)
 - 유럽은 거의 모든 UN ECE 기준을 채택
- **(국제기준과의 조화)** 각 당사자의 국내기준에 상응하는 UN ECE 또는 GTR 규정이 있는 경우,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동 국내기준을 해당 국제기준과 조화(부속서 제3조)



- 우리기준 : 29개 기준이 이에 해당
- EU기준 : 1개 기준(상용차 외부돌출물기준)이 이에 해당

상용자동차 외부돌출물기준

충돌시 상용자동차의 운전석 앞부분(앞범퍼, 앞비퀴)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준

- **(국내고유기준 준수)** 여타 UN ECE 또는 GTR 규정과 유사한 기준이 없는 경우는 국내 기준을 준수
- 인정기준과 조화기준 이외의 “여타 국내기준”과 관련하여 통상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협의(consultation)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부속서 제3조)
 - “여타 국내기준”과 관련하여 규제당국이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제공
- 협정 발효후 매 3년마다 국제적 또는 각 당사자 내에서 진행된 규정의 발전을 고려하여 인정기준과 조화대상기준 리스트를 검토(부속서 제3조)
 - 인정기준 또는 조화대상기준 리스트의 변경은 무역위원회에서 결정
 - 추후 조화가 완료된 기준은 해당 국제기준 채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동 조화기준에 따라 제작된 차량은 해당 국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나. 환경 기준

- **(배출기준 관련 과도조치)** 2009.1월부터 시행중인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AS: Fleet Average System*)가 적용되나, 1만대 이하 소량 판매 제작자에 대해 완화된 배출기준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과도 조치를 도입
 - ※ FAS : 제작자가 다양한 배출기준(LEV, ULEV, SULEV, ZEV)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출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동 제작자가 판매하는 모든 차종의 평균배출량이 일정한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동 과도조치는 한·미 FTA가 발효되어 1만대 이하 판매 제작자에 대한 배출기준이 도입될 때까지 적용되며, 과도조치상의 배출기준은 한·미 FTA 합의내용 보다는 강화된 기준

한-EU FTA 발효후 한·미 FTA 발효 이전		한·미 FTA 발효후	
차량 대수	NMOG 수치	차량 대수	NMOG 수치
1-250대	0.047g/km (LEV 기준)	1-4,500대	0.047g/km (LEV 기준)
251-4,000대	0.039g/km		
4,001-10,000대	0.030g/km	4,501-10,000대	0.037g/km
10,001대 이상	0.025g/km (ULEV 기준)	10,001대 이상	0.025g/km (ULEV 기준)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기준

- EU가 2014년 도입하는 Euro 6 OBD 기준에 대해 우리 OBD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 Euro 6 기준 도입시까지의 과도조치로 EU 제작사에 대하여 Euro 5 OBD(2009.9월 도입)기준을 충족하는 가솔린 휘발유 차량을 2010년부터 아래 범위 내에서 인정
 - 2010년 : 6,700대, 2011년 : 7,000대, 2012년 : 7,300대, 2013년 : 7,300대
 - 2008년에 유럽식 OBD 가솔린 휘발유 자동차를 한국에서 800대를 초과하여 판매한 제작사 : 2010년 1,200대, 2011년 1,500대, 2012년 및 2013년 각각 1,800대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유럽식 OBD 가솔린 휘발유 자동차를 연평균 750대를 초과하여 판매한 각 제작사 : 연간 브랜드별로 1천대
 - 기타 제작사 : 연간 1,500대의 전체 상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와 부품에 관한 작업반”이 결정한 원칙에 따라 제작자별로 분배
- 자동차 교역의 특수성(판매계획 수립, 주문, 운송 및 통관 절차에



장기간 소요)을 감안하고, 2010년에 한·EU FTA가 발효된다는 상호 이해 하에, 2010.1.1부터 Euro 5 OBD 가솔린 휘발유 차량의 수입을 허용

- 평균배출량관리제도(Fleet Average System) : 제작사가 다양한 배출기준(LEV, ULEV, SULEV, ZEV)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출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동 제작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종의 평균배출량이 일정한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배출기준 관련 소량 판매 제작자에 대한 한·미 FTA 합의내용
 - 4,500대 이하 판매 제작자 : LEV 기준(0.047 g/km) 적용
 - 4,501~10,000대 이하 : LEV와 ULEV의 중간기준(0.037 g/km)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관련, 우리나라는 디젤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럽식 기준을, 가솔린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식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EU 제작자중 미국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제작자가 우리나라로 가솔린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OBD를 개발해야 함.

4) 규정 수렴의 강화

- UN ECE 또는 GTR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새로운 UN ECE 또는 GTR 규정의 제정이 임박한 경우, 동 기준이 규율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규정 도입을 자제 (부속서 제4조)
 - 단, 특정 UN ECE 혹은 GTR 규정이 도로안전, 환경, 공중보건 보호에 부적합하다는 과학적, 기술적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규정 도입 가능
- 새로운 UN ECE 혹은 GTR 규정이 채택된 경우, 동 기준들을 인정하거나 해당 국내기준과 조화 (부속서 제4조)
- UN ECE 기준과 다른 국내기준을 도입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동 기준 유지 필요성을 협정 발효후 매 3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타방 당사국에 통보, 공표 (부속서 제4조)

- UN ECE 또는 GTR 기준이 없거나 적어도 한 당사자가 기술규정을 도입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국제기준 개발가능성에 대해 협의(부속서 제4조)
 - 국제기준 개발이 불가능 하거나 각 당사자가 서로 다른 기준을 도입 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기준의 근접화(approximation) 가능성에 대해 협의

5) 최혜국 대우

- 국내조세 및 배출기준에 대해서는 FTA 체결국을 포함한 제3국에 부여한 최혜국 대우(MFN)를 부여 (부속서 제5조)
 - 한·미 FTA 발효시 국내조세 및 배출기준 관련 한·미 FTA 합의내용을 EU에도 적용

- 국내조세 관련 한·미 FTA 합의내용
 - 특수세 :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 현 행 : 800cc 이하 면제, 800~2000cc 5%, 2000cc 초과 10%
 - 개편안 : 1000cc 이하 면제,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시 8% → 3년후 5%로 인하
 - 자동차세 :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차 종	경차 (800cc이하)	소형차 (800~1,000, 1,000~1,600)	중형차 (1,600~2,000)	대형차 (2,000초과)	
현 행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단계축소	80원	140원	200원		

- 배출기준 관련 한·미 FTA 합의내용 : 3. 시장접근 참조



6)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의 제품

- 신기술 혹은 신개념이 건강, 안전, 혹은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신기술 혹은 신개념을 적용한 제품의 시장 접근의 거부나 지연 불가 (부속서 제6조)
 - 시장접근을 거부하거나 리콜을 결정하는 경우, 과학적, 기술적 정보와 함께 타방 당사자와 관련 업체에 결정 내용을 통보

7) 무역제한 조치의 금지

- 자동차 부속서에 따른 시장접근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손상하는 조치를 자제 (부속서 제7조)
 - 단, 도로교통, 공중건강 혹은 환경보호와 기망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적 혹은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 가능

8) 규정의 적용

- 동등성을 인정한 UN ECE 기준 및 UN ECE 기준과의 조화가 완료된 기준에 대한 EU의 형식승인서는 동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기준 적합성을 추정(부속서 제8조제1항)
 - 단, 적합성이 추정되더라도 당사국이 자기인증제 또는 형식승인제에 따른 적합성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
 - 협정을 통해 인정한 UN ECE 기준과 UN ECE 기준과 조화된 국내 기준은 해당 UN ECE 기준을 채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우리기준에의 적합성 추정이 가능하나, 적합성 여부는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최종 판단
- 권한 있는 행정당국은 국내법에 따라 무작위로 제품을 선정하여 국내 기준 혹은 자동차 부속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인정기준

또는 조화가 완료된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의 경우 해당 제품을 리콜 (부속서 제8조제2항)

- 형식승인제의 경우,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생산 적합성 검사절차를 위반하였거나 혹은 해당 제품이 국내기준 혹은 인정기준 또는 조화가 완료된 기준에 따른 규정과 요건들을 위반한 경우, 형식승인 취소 가능 (부속서 제8조제3항)
- 모든 규정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도로 안전, 공중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급박하고 불가피한 위험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시장접근 거부 또는 리콜 가능 (부속서 제8조제4항)
 - 단, 타방 당사자와 관련 공급자에게 그 목적과 이유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통보

- 완성차 인증제도
 - 자기인증제(self-certification) : 자동차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차량을 판매하되, 정부는 사후적합성 검사를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형식승인제(type-approval) : 규제 당국이 제작차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인증서를 발행
-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은 자기인증제를, 환경기준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제를 채택
 - EU는 모두 형식승인제 채택

9) 자동차와 부품에 관한 작업반

- 자동차 부속서 적용에 관한 문제 협의 (부속서 제9조제1항)
 - 자동차와 부품 교역을 용이하게 하고, 시장접근 문제를 발생 이전에 검토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의
 - 양 당사자는 동 부속서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쪽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



-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문서로 답변

■ 임 무

- WP.29에서의 협력 준비
- 조화작업의 이행 논의, 통상문제 발생시 협의(consultation)를 위한 forum 제공, 인정기준 및 조화대상 기준 리스트의 변경을 위한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의 결정 준비
- 각 당사자의 고유기준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 논의
- 신기술·신개념 도입 및 예외적인 경우의 시장접근 거부 및 리콜 통보 논의
- 병행수입 차량에 대한 기술규정의 적용 문제 협의하고 적절한 경우에 권고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와 배출가스 관련 과도조치의 이행

자동차 병행수입(parallel import)

자동차 제작자와 공식 공급계약(dealership contract)에 의하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하는 행위

10) 분쟁해결절차

■ 신속 분쟁해결절차 도입(부속서 제10조)

- 자동차 관련 분쟁해결 신청에 대하여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보다 신속한 절차 도입
- 협의 개최시부터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 제출시까지의 소요기간을 160일(일반절차)에서 100일로 단축
 - 협의 기간 : 협의 요청후 30일 → 15일
 - 중간보고서 제출 기간 : 패널 설치후 90일 → 60일
 - 최종보고서 제출 : 패널 설치후 120일 → 75일

- 패널판정 결과 자동차 관련 협정 위반조치의 시정에 국회의 입법조치(법률개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이행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의 신속한 완료를 도모
 - 보통 90일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0일을 초과 불가
- 합리적인 이행 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특혜관세 이전 관세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
- 신속분쟁해결절차의 특정 규정의 적용 배제 합의 가능



참고 인정기준 리스트

대 상		요 건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
Occupant crash protection (충돌시 승객보호)	Frontal(정면)	UNECE Reg. 94	자동차안전기준 102조
	Side(측면)	UNECE Reg. 95	자동차안전기준 102조
Steering control rearward displacement (충돌시 조향핸들 후방이동)		UNECE Reg. 12	자동차안전기준 89조 1항 2호
Impact protection for the driver from the steering control system (조향장치 충격흡수)		UNECE Reg. 12	자동차안전기준 89조 1항 1호
Seating systems (좌석 및 그 잠금장치)		UNECE Reg. 17	자동차안전기준 97조
Head restraints (머리지지대 강도)		UNECE Reg. 17, UNECE Reg. 25, GTR 7	자동차안전기준 26, 99조
Door locks and door retention components (문열림방지장치)		UNECE Reg. 11, GTR 1	자동차안전기준 104조 2항
Instrument panel impact (계기판넬 충격흡수)		UNECE Reg. 21	자동차안전기준 88조
Seat back impact (좌석 등받이 충격흡수)		UNECE Reg. 21	자동차안전기준 98조
Armrest impact (팔걸이 충격흡수)		UNECE Reg. 21	자동차안전기준 100조
Sun visor impact (햇빛가리개 충격흡수)		UNECE Reg. 21	자동차안전기준 101조
Inside rear view mirror impact (실내후사경 충격흡수)		UNECE Reg. 46	자동차안전기준 108조
Towing hook (견인장치)		77/389/EEC	자동차안전기준 20조 1, 2, 4호
Rear under-run protection (후부안전판 강도)		UNECE Reg. 58	자동차안전기준 19조 4항, 96조

대 상	요 건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
	Installation (설치기준)	UNECE Reg. 48 자동차안전기준 38, 39, 40, 41, 42, 43, 44, 45, 47조
Lighting and signalling (등화장치)	Head lamp (전조등)	UNECE Reg. 1, 2, 5, 8, 20, 31, 37, UNECE Reg. 98, 99, 112, 113, 123 자동차안전기준 38조, 48조 3항, 106조 1호
	Front fog lamp (앞면안개등)	UNECE Reg. 19 자동차안전기준 38조의 2 1항, 106조 2호
	Backup lamp (후퇴등)	UNECE Reg. 23 자동차안전기준 39조, 106조 3호
	Clearance lamp (차폭등)	UNECE Reg. 7 자동차안전기준 40조, 106조 4호
	Registration plate lamp (번호등)	UNECE Reg. 4 자동차안전기준 41조, 106조 5호
	Tail lamp (후미등)	UNECE Reg. 7 자동차안전기준 42조, 106조 6호
	Stop lamp (제동등)	UNECE Reg. 7 자동차안전기준 43조 1항, 106조 7호
	Centre high mounted stop lamp (보조제동등)	UNECE Reg. 7 자동차안전기준 43조 2, 3항, 106조 8호
	Turn signal (방향지시등)	UNECE Reg. 6 자동차안전기준 44조, 106조 9호
	Auxiliary turn signal (보조방향지시등)	UNECE Reg. 7 자동차안전기준 44조, 106조 10호
	Rear fog lamp (뒷면안개등)	UNECE Reg. 38 자동차안전기준 38조의 2 2항, 106조 2호
	Retro-reflection devices (후부 반사지 또는 반사판)	UNECE Reg. 70, UNECE Reg. 3 자동차안전기준 49조 1, 2항, 107조



대 상		요 건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
Driver's visibility (운전자의 시계범위)		UNECE Reg. 46	자동차안전기준 50조, 94조
Engine Power (원동기 출력)		UNECE Reg. 85	자동차안전기준 11조 1항 2호, 111조
Device for driver's visibility (시계확보장치)	Windshield wiping system (창닦이기)	78/318/ EEC	자동차안전기준 51조 2항, 109조 1호
	Defrosting system (서리제거장치)	78/317/ EEC	자동차안전기준 109조 2호
	Defogging system (안개제거장치)	78/317/ EEC	자동차안전기준 109조 3호
	Windshieldwashi ng system (세정액분사장치)	78/318/ EEC	자동차안전기준 109조 4호
Passenger car brake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UNECE Reg. 13H	자동차안전기준 15조, 90조 1호
Brake system except passenger and trailer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UNECE Reg. 13	자동차안전기준 15조, 90조 2호
Trailer brake system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UNECE Reg. 13	자동차안전기준 15조, 90조 3호
Anti-lock brake system, except trailer (바퀴잠금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의 제동능력)		UNECE Reg. 13	자동차안전기준 15조, 90조 4호
Trailer anti-lock brake system (바퀴잠금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UNECE Reg. 13	자동차안전기준 15조, 90조 5호
Steering effort (조향성능)		UNECE Reg. 79	자동차안전기준 14조, 89조 2항
Speed limiter (최고속도제한장치)		UNECE Reg. 89	자동차안전기준 110조의 2
Speedometer (속도계)		UNECE Reg. 39	자동차안전기준 110조

대 상		요 건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장해 방지장치)		UNECE Reg. 10	자동차안전기준 110조의 2
Fuel leakage in collision (충돌시연료누출방지)		UNECE Reg. 34 (EC to check), UNECE Reg. 94, UNECE Reg. 95	자동차안전기준 91조
Bumper impact (범퍼 충격흡수)		UNECE Reg. 42	자동차안전기준 93조
Seat belt assembly anchorages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UNECE Reg. 14, UNECE Reg. 16	자동차안전기준 27조 1, 2, 3, 4, 5항, 103조 1, 2, 3항
Child seat anchorage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UNECE Reg. 14	자동차안전기준 27조의 2, 103조의 2
Horn noise, stationary noise and silencer for vehicles (4 wheels) (소음방지장치 및 경음기)		UNECE Reg. 28 UNECE Reg. 51	자동차안전기준 35조, 53조, 소음진동규제법 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29조
Emission and noise (except the passer-by noise of 3 or 4 wheels) for Motor cycles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3륜 이상 이륜차의 가속주행소음 제외))		UNECE Reg. 40, UNECE Reg. 41, UNECE Reg. 47 Directives 2002/51/EC, 2003/77/EC, 97/24/EC Chapters 5 and 9	대기환경보전법 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62조, 소음진동규제법 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29조
Emission Diesel (incl. OBD)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OBD 포함))	Below 3.5t vehicle	UNECE Reg. 83, UNECE Reg. 24 Regulation (EC) 692/2008	대기환경보전법 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62조
	Over 3.5t vehicle	UNECE Reg. 49 Regulation (EC) 692/2008	
Tyres (타이어)		UNECE Reg. 30, 54, 75, 106, 117, 108, 10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9조, 20조, 21조 및 시행규칙 2조 2항, 19조



참고 조화대상 기준 리스트

대 상	대한민국 기술규정	상응하는 UN ECE 규정
Maximum Stable Inclination Angle (최대안전경사각도)	자동차안전기준 8조	UNECE 107
Minimum Turning Radius (최소회전반경)	자동차안전기준 9조	UNECE 107
Running Gear (주행장치)	자동차안전기준 12조	UNECE 30, 54
Controls and Displays (조종장치 등)	자동차안전기준 13조	UNECE 121
Frame and Body (차대 및 차체)	자동차안전기준 19조	UNECE 58, 73
Coupling Device (연결장치)	자동차안전기준 20조3, 5호	UNECE 55
Theft Protection (도난방지장치)	자동차안전기준 22조	UNECE 18
Riding Accommodation (승차장치)	자동차안전기준 23조	UNECE 107
Driver's Seat (운전자의 좌석)	자동차안전기준 24조	UNECE 107
Passenger Seat (승객좌석의 규격)	자동차안전기준 25조	UNECE 107
Seat Belt (좌석안전띠장치등)	자동차안전기준 27조	UNECE 16
Standing Space (입석)	자동차안전기준 28조	UNECE 107
Entrance (승강구)	자동차안전기준 29조	UNECE 107
Emergency Exit (비상구)	자동차안전기준 30조	UNECE 107
Aisle (통로)	자동차안전기준 31조	UNECE 107
Safety Glazing (창유리등)	자동차안전기준 34조	UNECE 43, GTR 6
Hazard Warning Signal Lamp (비상점멸표시등)	자동차안전기준 45조	UNECE 48

대 상	대한민국 기술규정	상응하는 UN ECE 규정
Speedometer & Odometer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자동차안전기준 54조	UNECE 39
Fire Extinguisher (소화설비)	자동차안전기준 57조	UNECE 36
Running Gear (주행장치)	자동차안전기준 64조	UNECE 75
Service Brake System (제동장치)	자동차안전기준 67조	UNECE 78, GTR 3
Headlamp (전조등)	자동차안전기준 75조	UNECE 53, 56, 57, 72, 74, 76, 82
Registration Plate Lamp (번호등)	자동차안전기준 76조	UNECE 50,53
Tail Lamp (후미등)	자동차안전기준 77조	UNECE 50,53
Stop Lamp (제동등)	자동차안전기준 78조	UNECE 50,53
Turn Signal Lamp (방향지시등)	자동차안전기준 79조	UNECE 50,53
Rear Reflex Reflector (후부반사기)	자동차안전기준 80조	UNECE 3,53
Rear view Mirror (후사경)	자동차안전기준 84조	UNECE 81
Speedometer (속도계)	자동차안전기준 85조	UNECE 39



참고 WP.29, 58협정, 98협정 참고자료

1. WP.29

-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내륙교통위원회(Inland Transport Committee)의 산하기구로 1952.6.6 설립
 - 정식 명칭 :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 설립 당시 명칭(Working Party on the Construction of Vehicles)을 2000.3월 변경
 - 목적 : 자동차 안전, 환경보호, 에너지 효율 증대 등을 위한 기술 규정의 조화 및 개발
- WP.29는 현재 3개 UN ECE 협정을 관리
 - 58 협정, 98 협정, 97 협정
 - ※ 97 협정 : 자동차의 정기 기술점검에 관한 단일 조건 채택에 관한 협정
 - WP.29 총회는 연 3회, 6개 분과별 회의는 연 2회 개최
- UN 회원국과 UN 회원국에 의해 설립된 지역경제통합기구는 WP.29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WP.29가 관리하는 협정의 체약국이 될 수 있음.

2. 자동차 규정의 조화(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 자동차 판매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자동차 관련 규정과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국의 자동차 등록절차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승인(approval)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국가마다 다른 규정과 승인절차를 유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디자인

변경, 추가 시험, 중복승인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규정의 조화와 단일한 국제기준 마련이 필요

- 상기 조화기준 및 국제기준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는 추가적인 시험이나 승인 없이 국가간 거래가 가능

3. 58 협정(1958 Agreement)

- 안전, 환경, 에너지 및 도난방지 요건 등에 관한 자동차와 부품의 단일 표준 확립을 목적으로 UN 유럽경제이사회 주도로 체결된 협정(1959. 6.20 발효)
 - 정식 명칭 : "Agreement concerning the adoption of uniform technical prescription for wheeled vehicles, equipment and parts which can be fitted and/or be used on wheeled vehicles and the conditions for reciprocal recognition of approvals granted on the basis of these prescriptions"
 - 2010.9월 현재 체결국은 48개국(미국,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은 불참)이며 우리나라는 2004.11월 가입
 - 동 협정에 따라 현재 126개의 UN ECE 규정 채택
- 동 협정은 비유럽 국가의 참여를 촉진하고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으로의 발전을 위해 1995년 개정(1995.10.16 발효)
 - 규정의 이행과 관련 형식승인(type-approval)의 대안으로 자기인증제(self-certification)를 인정하여 자기인증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협정 가입이 가능해짐.
 - ※ 58 협정은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을 규정하여 체결국이 UN ECE 규정에 따라 승인한 제품에 대해서 다른 체결국이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 UN ECE 규정의 상호인정은 체결국이 모두 승인한 규정에 대해서만 적용



4. 58 협정 체결국은 모든 UN ECE 규정을 채택해야 하는지?

- 58 협정 체결국은 UN ECE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 이미 채택한 UN ECE 규정도 1년간의 통보기간을 거쳐 적용을 중단 가능

5. 98 협정(1998 Agreement)

- 규정의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들의 세계 기술규정(Global Technical Regulations) 제정에의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체결
 - 정식 명칭: "Agreement concerning the establishing of global technical regulations for wheeled vehicles, equipment and parts which can be fitted and/or be used on wheeled vehicles"
 - 2010.9월 현재 체결국은 31개국(미국, 중국, EC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 참여)이며 우리나라는 2000.11월 가입
 - 동 협정에 따라 현재 9개의 GTR 규정 채택
 - 58 협정상의 UN ECE 규정과 병행적으로 적용

6. 98 협정 당사국은 모든 세계기술규정(GTR)을 인정해야하는지?

- 98 협정의 당사국은 GTR 규정을 채택할 수 있음
 - 해당 GTR 규정의 제정에 찬성 투표한 당사자는 동 규정을 자신의 법 또는 규정으로 채택하기 위한 절차에 회부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규정을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
- 당사국은 해당 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동 규정을 준수한 제품을 인정할 수 있음.

3-3 의약품 및 의료기기 비관세

1. 개요

- 한·EU 양측의 보건의료 제도를 존중하는 가운데 의약품·의료기기의 개발과 접근 촉진, 양자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한·미 FTA 수준에서 합의
 -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 국제관행에 부합한 상대방의 적합성 평가 수용 요청을 고려하는 등 양자간 규제 협력 강화
 - 의약품·의료기기 제조·공급업체의 윤리적 관행 제고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실무그룹” 설치

2. 상세 내용

1) 일반 규정 (부속서 2-라 제1조)

- 양측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한·EU 보건의료 제도의 차이 존중, 혁신의 중요성,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 등 규정
 - 양측이 공유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님.
- 구체적으로 다음 원칙에 대한 중요성 확인
 -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적절한 접근



-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혁신에 대한 유인
- 투명하고 책임있는 절차를 통한 의약품·의료기기의 혁신과 이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접근 촉진
-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자 또는 공급자, 보건의료 제공자에 의한 전 세계적인 차원의 윤리적 관행
-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및 품질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 기구에서의 국제적 관행 개발 협력

2) 혁신에의 접근 (부속서 제2조)

- 동 조항은 양측이 의약품·의료기기 급여와 가격산정을 위한 절차를 유지·운영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
- 의약품·의료기기의 급여와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각종 절차·기준이 투명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일 것을 보장
 - 동 규정은 특정 가격하에서의 급여 의무 부과 또는 가격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음.
 - 급여나 가격 결정은 객관적이고 명료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준에 근거하며, 동 기준은 “지침”, “공고”, 또는 “고려사항” 등의 형태를 취함.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경제성 평가 지침」 및 「약가 협상 지침」 등을 통해 이미 가능
- 특허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치를 급여액(가격)에 있어 적절히 인정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경제성 평가 지침」 및 「약가 협상 지침」 등을 통해 이미 가능
- 의약품·의료기기 비교제품이 있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증거를 기초로 비교제품보다 높은 가격 신청 허용

- 현행 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0조의2)상 이미 가능
- 의약품·의료기기의 최초 가격 설정 이후 추가적인 안전성·유효성 증거를 기초로 더 높은 가격 신청 허용
 - 현행 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상 이미 가능
- 안전성·유효성·품질·혜택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추가 적응증에 대한 급여 및 가격 조정 신청 허용
 - 현행 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상 이미 가능
-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직권조정을 할 경우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
 - 행정절차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가능

3) 투명성 (부속서 제3조)

-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및 규제와 관련된 법·규정·절차 및 이행지침(이하 "규칙")의 신속한 공개
- 제정 또는 개정되는 "규칙"을 사전에 공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시 기회 제공
 - 행정절차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가능
-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제시된 중요한 의견에 대한 처리 및 최종 규정 채택시 개정 사항 설명
 - 행정절차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가능
-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칙"의 최종 공표일과 발효일간 합리적 시간 설정



-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급여 및 가격산정 절차를 유지·운영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사항 보장
 -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과 급여에 대한 신청을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처리하며, 제출된 정보가 미흡할 경우 보완 허용
 - － 현행 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1조의2)상 이미 가능
 -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과 급여에 관련된 모든 규정·기준 등을 합리적이고 지정된 시간 내에 신청자에게 공개
 -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경제성 평가 지침」 및 「약가 협상 지침」 등 관련 규정 이미 공개
 -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 및 급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의견 제시 기회 부여
 - － 현행 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이미 가능
 -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과 급여에 대한 권고·결정의 근거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권고·결정에서 인용된 전문가 의견이나 학술 연구에 대한 인용 포함)하며 특히 보험등재 또는 약가인상 거절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한 기준을 언급한 상세한 사유서를 제공
 - － 현행 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이미 가능
 - － 약가 협상 사항은 제외 (제약회사와 보험공단이 당사자이므로 해당 없음.)
 - 권고·결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적·준사법적 또는 독립적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가격과 급여에 대한 결정을 전달하는 시점에 구제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절차 및 일정을 신청자에게 통지
 - － 가격 산정과 급여 결정을 다룰 수 있는 사법적 절차로서 행정소송 제도는 이미 마련

- 혁신 및 복제의약품 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가격산정과 급여 관련 국가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공
-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과 급여 관련 중앙기구 명단의 공개
 - 관련 중앙기구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명단 이미 공개
-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및 규제와 관련된 모든 조치가 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

4) 윤리적 영업 관행 (부속서 제4조)

-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자가 보건의료 전문가·기관에 부당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벌칙과 절차를 채택·유지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시행 중
-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자가 행한 부적절한 유인행위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금지 경제개발협력기구 협약」하에서의 의무를 상기
 - 한국은 1997.12월 상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협약을 서명하였으며, 1999.1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정

5) 규제 협력 (부속서 제5조)

- 세계보건기구(WHO), OECD 등 국제기구가 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국제 조항, 관행 그리고 지침을 적절하게 고려
- 적합성 평가가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및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양국의 해당 관행이 국제적 관행과 일치



하는 경우, 한쪽 당사자가 다른쪽 당사자에게 동 평가를 수용해줄 것에 대한 요청을 고려

-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합의사항의 이행 점검 및 지원, 관련 사항 논의 및 상호 이해, 협력 증진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실무그룹 설치
 - 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이상 회합

3-4 화학물질 비관세

1. 개요

- EU가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승인제도) 등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측이 주도적으로 협력을 요구한 분야
 - 화학물질 비관세 관련 사항을 한·EU FTA에 포함시킴으로써,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과 통상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
- 화학물질 규제 관련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메커니즘 확립
- 화학물질 분야 협력 증진과 규제 관련 대화를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 설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EU의 화학물질 관리제도로서, EU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등록·평가·승인을 의무화(2006.12월 채택, 2007.6월 발효, 2008.6월 시행)

- 대부분의 규제대상 국내업체들은 지난 2008.12월 이전에 사전등록을 마무리하여 수출량별로 일정 유예기간을 확보

한국의 대EU 화학물 및 관련제품 교역 동향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백만불)	1,288	1,389	1,649	2,167	2,639
수입(백만불)	4,004	4,557	5,186	6,105	6,811

출처 : 한국무역협회



2. 상세 내용

1) 목적과 원칙

- 개방성, 비차별주의, 투명성의 원칙에 따른 경쟁적 시장 조건 확립
- 호혜적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 높은 수준의 공중 보건과 환경 보호
- 물질 위해성 평가 관련 대체 방법의 장려와 동물 실험 축소
- 적절한 규제 메커니즘의 이행과 비밀정보 보호
- 국제 화학물질 관리전략(SAICM)의 이행에 기여
- 화학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우수 사례(best practice)의 개발과 증진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유엔환경개발계획(UNEP)에 의해 제기되어 06년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ICCM)에서 채택된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인간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최소화를 위한 원칙과 2020년까지 달성해야할 원칙 실행계획을 규정한 포괄적 추진 전략

2) 협력 분야

- 화학물질 분야에서의 무역 원활화와 증진 위해 아래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
 - 화학물질 관련 법, 규정 및 조치의 투명성 확보
 -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규제와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적정 절차 제공
 - 법률의 채택 및 이행, 위험성 평가 및 사업비밀정보의 등록·인증·신고·승인 관련 우수 사례의 적용
 -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관련, 우수실험실 운영원칙(GLP, Good Laboratory Practice)과 실험지침(Test Guidelines) 분야에서의 협력

GLP(Good Laboratory Practice)

화학물질,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설·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

실험지침(Test Guidelines)

화학물질,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수행에 있어서 준수해야할 시험조건 및 시험절차 등에 대한 지침

3) 화학물질 규제 관련 대화 메커니즘 확립

-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 양자 대화 메커니즘 확립
 - 화학물질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문제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논의하기로 합의
- 화학물질 분야 협력 증진과 규제 관련 대화를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 설치
 -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2년에 한차례 개최



4 무역구제

1. 개요

-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
 - 일부 민감 농산물에 대해, 미리 설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자동 발동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Agricultural Safeguard)를 도입하여 수입 급증에 대비한 예외적 수단 확보
- 무역구제조치 발동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WTO에서 보다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 상세 내용

1) 세이프가드

- 양자 세이프가드
 - FTA에 따른 관세감축이 원인이 되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MFN) 관세율까지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율을 인상
 - ※ 양자 세이프가드는 관세철폐후 10년까지 발동 가능(한·미 FTA의 경우 발효후 10년 또는 10년 이상 관세철폐 대상 품목의 경우 관세철폐기간 까지 발동 가능)

- 농산물 세이프가드
 - 일부 민감 농산물에 대해, 미리 정해둔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한 특혜관세율을 일반(MFN) 관세율까지 인상
- 다자 세이프가드
 -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을 확인
 - 다만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를 동시에 발동할 수 없도록 제한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 반덤핑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상대국에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 사실을 통보
 - ※ WTO 반덤핑 협정에는 조사 개시전 통보 의무만 있음 (WTO 반덤핑 협정 제5.5조)
- 덤핑마진이 수출가액의 2%미만일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미소기준(de minimis) 확대 적용
 - WTO 반덤핑 협정 제5.8조에 따른 원심(original investigation) 뿐만 아니라, 신규 수출자 재심, 상황변화 재심 등 재심(review)에도 적용됨을 명시
 - ※ WTO 반덤핑 협정상 미소기준은 원심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을 뿐, 재심에 대해서는 적용여부가 불분명
-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는 덤핑 마진 또는 보조금 마진이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부과 가능 ("Lesser Duty Rule")
 - ※ WTO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상 Lesser Duty Rule은 바람직한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적용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WTO 반덤핑 협정 제 9.1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9.2조)



- 비합산(non-cumulation) 검토 의무 부과
 - 다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합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의무를 부과
 - ※ WTO 반덤핑 협정상 합산여부는 조사당국의 재량임 (WTO 반덤핑 협정 제3.3조)
-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전에 공익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 ※ WTO 반덤핑 협정상 관련 규정 없음.
-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항은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제외
 - 단, 중개절차(Mediation)는 적용 가능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1. 개요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등이 양측간 상품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에 대해 규정
 - 투명성 제고 등 기술규정 제·개정시의 의무 준수, 표준 및 기술규정 등 분야에서 공동협력 강화, 양측간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체 설치, 표시 및 라벨링 규제의 교역장애 요소 최소화 등을 포함

2. 상세 내용

1) "Made in EU" 원산지 표기 불허

- 당초 EU는 제품이 EU 회원국내 여러국가를 거쳐 제조되는 경우에 원산지 결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Made in EU" 표시의 허용을 요구
 - 우리측이 소비자에 대한 선택권 제한 및 기만적 행위 유발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EU는 "Made in EU" 허용 요구를 철회

2) 표시 및 라벨링

- 표시 및 라벨링 규제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 이외에 양측간 통상장벽이나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증(제4.9조)



① 정보제공 목적 외 강제적 라벨요건을 최소화

- 특히 재원확보를 위한(fiscal purpose) 정보표시 등은 교역장애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합법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함.

※ EU는 “fiscal purpose”를 위한 정보 표시나 라벨의 사례로 제품의 유통채널이나 수입업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시(예: 우리나라 주류의 유통경로별 용도구분 표시제)하였으나, 주류 용도 구분 표시제는 “합법적 목적 수행”을 위한 표시에 해당

② 라벨의 사전승인, 등록, 인증 철폐

- 통관 후 시장 진입 전후로 표시 혹은 라벨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통관 전에 표시 혹은 라벨의 승인, 등록, 인증 절차 요구를 금지기로 합의

※ 통관시 표시나 라벨에 기재된 사항의 적합성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제품은 반송 처리할 수 있는 수입국의 심사권한은 유지됨.

③ 복수언어의 사용

- 한글로 표시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여타 언어로 병기되거나, 표기되는 내용이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복수언어의 사용을 허용

④ 비영구적, 탈착가능 라벨 허용

- 규제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영구적 혹은 탈착가능 라벨을 허용하도록 노력기로 합의

※ 표시기재사항의 위·변조가 가능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제품 선택권 보장이 어려운 경우는 규제 목적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탈착 가능한 라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기술규정 제·개정시의 의무

- 기술규정 관련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 국내(혹은 회원국내) 이체

관계자(업계, 단체, 개인 등)는 물론 상대측 이해당사자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민대우 원칙규정(제4.4조제2항)

- 양측의 이해관계자는 서로의 기술규정 제·개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정보 입수 및 의견 제안이 가능(비공개 과정은 제외)

- ※ 이는 무역 상대국의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국의 의견제시(comment) 권리만 포함하고 있는 WTO TBT 협정보다 한층 강화된 투명성 의무를 부과 (한·미 FTA TBT 협정문에도 동일 내용 포함)

- 기술규정의 제·개정시, 상대측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기술규정의 제·개정 목적(objective), 법적근거(legal basis), 정당성(rationale) 등 정보를 제공(제4.4조제1항 다호)

- ※ 상품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기술규정의 채택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완화에 기여(통상마찰 사전예방 효과 기대)

- 제·개정된 기술규정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키 위한 공개된 웹사이트 등 설립 및 상대측 요청시 지체 없이 서면 정보 및 적절한 지침(guidance)을 제공(제4.4조제1항 라호)

- ※ 우리나라는 TBT 통합포탈정보사이트(www.knowtbt.kr)에서 기술규정 제·개정 사항 및 TBT 관련 제반 정보를 제공

- 제·개정하고자 하는 기술규정안을 WTO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제4.4조제1항 바호)

- ※ 60일 기간(WTO/TBT 권고사항) 확보를 통해 양국간 기술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 “충분한 시간”과 관련하여 WTO/TBT 위원회에서는 이를 60일로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법에는 입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규정(행정절차법)

4) 공동 협력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규제대화체(regulatory



dialogue)구성 가능 (제4.3조제1항)

◦ 규제대화체의 구성으로 인해 양측간 TBT 정책이슈에서 협력 촉진을 기대

※ 쟁점 이슈가 있을 때 협의를 위해 관련 규제 기관간에 설치하는 임시적 성격의 대화 채널로서 수평적(예: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혹은 분야별(예: 의약품, 화장품 등) 주제를 다룸.

■ 양측간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불필요한 차이를 줄이고 수렴(converging) 혹은 정합(aligning) 가능성을 검토(제4.3조제2항 다호)

※ WTO TBT 협정에는 타국 기술규정이 자국 규제목적 달성에 충분한 경우 타국 기술규정을 자국 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권장(2조 7항)

5) EU회원국간 기술규정 이행의 통일성

■ EU회원국간 “통일성 있는 제도 이행 확보 노력”을 EU가 수용하여 회원국별 상이한 기술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對EU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잠정적 장치를 마련(제4.4조제3항)

◦ EU 회원국 사이에 기술규정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생기는 혼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측은 “EU 회원국간에 기술규정이 통일성 있게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시에(in a timely manner) 해결토록 노력”키로 규정

6) TBT 조정자(Coordinator) 지정

■ TBT 협정의 이행 및 행정 사항 협의, TBT 이슈 해결을 위해 TBT 조정자를 지정(제4.10조)

◦ 양측은 매년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운영을 의무화해야 하는 정례 위원회(TBT committee)는 설치하지 않는 대신 조정자를 지정하고 필요시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

6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1. 개요

- WTO 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확인하고, SPS 위원회 설치를 통해 협의의 장 마련
- 정보교환 및 투명성 제고로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국제기준·지침·권고 개발 및 동물복지 관련 협력
- 동·식물 위생상황 등을 기초로 수입요건 부과, 지역화 인정절차 마련 등을 규정
- SPS 관련 분쟁은 양자간 분쟁해결절차에서 배제됨을 명시(WTO 분쟁 해결절차 적용)

2. 상세 내용

1) SPS 챕터의 목적

-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 또는 위생을 보호하면서 SPS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제5.1조 제1항)
 - 각자의 축산업 여건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동물복지 문제에 관하여 협력할 것을 규정(제5.1조제2항)



※ SPS 조치 :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질병, 오염물질 관련 규제 등)

2)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확인

-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제5.4조)하고, 양측간 SPS 조치 관련 분쟁은 FTA의 양자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WTO 분쟁해결절차 적용)(제5.11조)

3) 투명성 및 정보교환

- SPS 조치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품목의 수입요건을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규정(제 5.5조)

4) 국제기준

- SPS 관련 국제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제5.6조)
 -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공동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
 -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에 협력

5) 수입요건

- 수입요건을 부과함에 있어서, 일반적(general) 수입요건은 타방의 영역 전체에 걸쳐 적용(제5.7조제1항)
- 단, 수출국의 동·식물 위생상황에 기반하여 수출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추가적인 특정 수입요건 부과 가능(제5.7조제2항)

※ EU 27개 회원국별로 위생상황 및 방제능력 등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

- 동 특정 수입요건 부과의 근거가 되는 수출국의 동·식물 위생상황은 WTO SPS 협정, CODEX, OIE, IPPC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수입국이 결정

- CODEX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OIE :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 IPPC :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6) 병해충 무·저발생지역 (지역화)

- WTO SPS 협정의 지역화 개념 인정을 확인하고, 지역화 인정 절차를 마련(제5.8조제1항)
 - 약 2년간의 신뢰구축활동(confidence building activities)을 통하여 지역화 관련 제도 및 적용에 관해 상호 이해를 증진(제5.8조제3항)
 - 수입국이 지역화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되,
 - 병충해 무·저발생 지역 결정시, WTO SPS 협정 및 OIE·IPPC 기준에 따라 수출국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수입국이 수출국의 동·식물 위생상황을 결정하고, 수출국이 자국의 동·식물 위생 상황에 대해 내린 결정을 고려(제5.8조제4항)
 - 또한, 양측의 입장이 다를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협의를 개시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함(제5.8조제4항).
 - 이 밖에 지역화 결정시 고려할 요인(제5.8조제2항), 수출국의 정보 제공 의무(제5.8조제5항) 등 WTO SPS 협정에 규정된 내용을 열거



지역화(regionalisation)

-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는 국가라도 일부 지역에서 무·저발생 상태가 유지될 경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검역·관리하도록 한 WTO SPS 협정의 원칙
- 병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방역기술 중의 하나로서 대다수 회원국들이 활용하여 왔으나, UR협상 이후 국제 무역 규범화
- WTO SPS 협정 제6조는 지역화 인정시 고려요소(지리, 생태학적 체계, 역학적 감시 및 방역관리의 유효성 등) 및 수출회원국의 병충해 무·저발생 지역 증명을 위한 증거 제시 의무 등을 규정
- 관련 국제기구(OIE, IPPC) 및 WTO SPS 위원회는 지역화 인정을 위한 평가절차 및 기준 등 세부 기준 제정
 - OIE(세계동물보건기구) 및 IPPC(국제식물보호협약)는 “지역” 개념을 농장 단위(OIE : 구역 (compartment), IPPC : 재배포장(production site))까지 구체화함.

7) 동물복지 협력

- 양자간에 동물복지 분야의 정보 및 경험 등을 교환하며, 이를 위해 작업계획(working plan)을 채택(제5.9조)
 - 국제무대에서 동물복지 기준(특히 기절 및 도살에 관한 기준)을 개발하는데 협력

동물복지

- WTO농업위원회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논의가 비교역적 관심사(NTC : Non-Trade Concern)로 제기(2000.6월)되었고, OIE(국제수역사무국)는 동물복지 작업그룹을 설치하고 규범화 작업을 추진중
-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2007.1월,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되고 있음.
 - ☞ 「동물보호법」 주요내용
 - 반려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 관리 의무 강화
 - 동물 학대행위 금지
 - 유기동물 보호조치
 - 동물 판매업 및 동물 장묘업 등의 등록제 도입 등

8) SPS 위원회 설치

- 아래 기능을 갖는 SPS 위원회(Committee) 설치(제5.10조)
 - SPS 챕터의 이행을 위한 필요 절차 개발
 - 동 챕터 이행 과정 모니터링
 - 지역화 관련 신뢰구축활동의 성공적인 완료(completion) 확인
 - 육류 작업장 및 적절한 경우 식물 생산장소 승인절차 개발
 - SPS 조치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의 장(forum) 제공
- 연 1회 개최하며, 구체적 일시, 장소, 의제 등은 협의하여 결정(제5.10 조제2항)



7 관세 및 무역원활화

1. 개요

- 통관절차(원산지절차) 분야는 주로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방식, 특혜관세 신청 절차 및 원산지 검증방식 등에 대하여 규정
 - 원산지증명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하였고, 원산지 검증은 원칙적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
- 무역원활화 분야는 상품 수출입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관의 절차적 내용과 관세협력 관련된 내용을 규정
 -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신속화에 대한 사항과 수출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및 양측 관세당국간의 협력증진 등을 규정

2. 상세 내용

1)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제도

가. 원산지 자율증명제도 채택

- 특혜관세를 받기위한 원산지증명은 원칙적으로 인증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방식을 채택 (원산지 의정서 제16조제1항)

- 인증수출자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이후 지정
- 다만,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 스스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는 한·EFTA 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인보이스 신고(Invoice Declaration) 방식을 채택 (원산지 의정서 제15조제1항)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나. 특혜관세 신청절차 간소화

- 특혜관세 신청시 수입자수출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혜관세 신청절차 도입
 - 수입업체가 특혜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고 수입국이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원산지 의정서 제19조)
 -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상 세관이 요구할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 소액의 개인용 물품과 여행자 개인수하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원산지 의정서 제21조)
 - 금액한도는 EU의 경우 개인용품은 500유로 이하, 개인수하물은 1,200유로 이하이며, 우리의 경우 구분 없이 미화 1,000불 이하
 -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1년(우리 수입) 또는 2년(EU 수입)이내에 사후신청 허용
 -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에 특혜관세 신청 필요(원산지 의정서 제18조1항)
 - 다만,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원산지 의정서 제18조제2항)



-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무효화할 수 없도록 규정(원산지 의정서 제24조)

2) 원산지 간접검증 및 공동검증제도 채택

- 특혜관세 진위 여부 검증은 원칙적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요청하는 “간접검증방식”을 도입(원산지 의정서 제27조)

※ 한-EFTA FTA 원산지 검증제도와 상당부분 유사

- 수입국 관세당국은 무작위 또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 요구
- 검증요청을 받은 수출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통보
 - 수출국 관세당국이 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적용 배제 가능
- 간접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동검증 근거를 도입함으로써 협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원산지 의정서 제27조제8항, 세관분야 상호 행정 지원 협정 의정서 제7조제4항)
 - 수입국 관련 공무원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얻고 원산지 검증에 참석할 수 있는 공동검증 방식 활용 가능
-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지 않고 특혜관세 적용을 바로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원산지 의정서 주해 제9항)
 - 원산지 규정상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가 비당사국 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경우
 - 수입국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및 여타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원산지 의정서 제23조제1항)
 - 우리의 관세부과 제척기간(5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여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
 - ※ 증빙서류 :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증빙서류,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서류, 원재료의 생산공정 증빙서류 등
 -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기 위하여 전자방식으로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전자방식 보관에 관한 근거는 국내법에 기반영된 사항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3) 수출입절차 간소화투명성 제고를 통한 무역원활화

가. 물품반출 신속화

- 한-EU간 교역원활화를 위하여 다양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
 - 신속한 화물반출 및 반출시간 단축 노력 의무 규정
 - 수입전 사전신고,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부두직통관 제도 도입
 - 특급탁송화물 등 특정화물에 대하여는 검사 및 통관서류를 최소화 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
 -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위험 화물은 중점 검사하되 저위험 화물은 통관 및 반출 절차를 간소화
 - 위험성이 낮은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이 신속히 통관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물류비용의 절감 및 생산성 증대 기대
 - ※ 현재 우리 관세당국은 화물위험관리시스템(Cargo Selectivity System)을 개발하여 화물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검사하는 제도를 운영중



나. 세관행정의 투명성 증대

- 세관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관련 법령 등을 인터넷 등 공식매체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 의무화
 - 이해관계인의 관세 및 무역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안내창구 운영
 - ※ 현재 우리 관세당국은 관세법령과 행정규칙을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고 있고, 관세청에는 콜센터를, 각 세관관서에는 민원전담창구를 설치·운영중
 - 통관 관련 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개정시 무역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사전 공표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토록 함

다. 원산지 등 사전판정제 도입

- 품목분류 및 원산지 등에 관한 무역업자의 의문사항에 대해 수입국 관세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판정제도 규정
 - FTA 특혜관세 신청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 기대
 - 품목분류와 관련한 사전판정 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

라. 불복청구 및 자료 비밀유지

- 수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세결정에 관한 불복청구권 보장
 - 수출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수입국 행정심판 당국에 소명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원산지 소명자료는 제품원가 등 기업기밀을 포함하고 있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기 곤란하므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자료를 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비밀유지를 위해 수입국 행정심판 당국의 자료비밀 보장 의무 규정

- 비밀자료는 제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 목적이외의 사용을 금지
-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공개하는 경우 제출자에게 사전 통보 의무화

마. 수출입 관련 수수료 부과 제한

- 수출입 관련 수수료는 부과대상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계된 경우에만 부과 가능
 - 관련 서비스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과하거나 종가세 방식(ad valorem)으로 부과하는 것은 금지
 - 수수료와 관련한 정보는 인터넷 등을 포함한 공식매체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

바. 관세협력 확대

- 세관분석 기법 조화, 세관공무원 교환, 공동훈련 프로그램, 지적재산권 단속 및 화물 보안 등과 관련한 관세협력 확대 추진
- 관세사범과 관련한 상호정보교환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존 “한·EU 세관상호지원 협정”을 FTA 협정 체계로 흡수
-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 산하에 관세위원회(Customs Committee)를 설치하여 원산지, 통관, 무역원활화 관련 문제를 협의
 - 통관지연, 품목분류, 원산지 등 관련 분쟁발생시 일방 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관세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원산지 규정

1. 개요

-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을 마련
- 우리측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 해외 조달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규정
 -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우리측 수출이익이 있는 가공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 예외 물량을 확보
- 현행 관세환급제도를 계속 유지
 - 다만, 협정발효 5년후부터 특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틀 마련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결정

2. 상세 내용

1) 원산지 일반 규정

가. 특혜 원산지 기준

- FTA 특혜원산지 판정기준 중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은 협정문에서, 각 품목에 대한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속서에서 규정
 -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추세를 반영한 정교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마련
- 양측은 완전생산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 ①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 ②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 ③ 양국영역에서 자란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④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 자원
 - ⑤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
 - ⑥ 당사국의 영역밖에서 그 선박에 의한 어로행위로 획득된 상품과 다른 상품 및 배타적으로 동 상품만 이용한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제품
 - ⑦ 당사국 영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공정으로부터의 폐기물 및 부스러기
 - ⑧ 당사국 영역밖의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채취된 상품. 다만, 당사국은 그 해저나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함.
- 양국은 완전생산기준이외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 규정



- 부가가치 기준 (VAR, Value Added Rule)
 - 한·EU FTA에서의 부가가치기준은 공장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허용된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의 상한선을 규정
 - ※ 예 : Manufacture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4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 공장도 가격 :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임. 다만 그 가격은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동 상품의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

세번변경 기준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번호)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예:HS 2단위, 4단위, 6단위)기준으로 차이가 있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예 : 원유(HS2709)를 수입하여 석유(HS2710)를 생산할 경우 4단위 세번 변경

부가가치 기준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하(예 : 공장도 가격 기준의 45%)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주요공정 기준

-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나. 미소기준(De Minimis)

- 양국은 제품의 원산지 관점에서 역외산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가 양국이 합의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 가격(공장도가)의 10%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합의

※ 미소기준은 원산지기준 판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 FTA에 반영

- 단, 섬유류(50-63류)에 대해서는 일반 미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주해서(Introductory Notes)에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섬유미소기준 적용

	한-EU FTA	한-미 FTA
섬유류 (50-63류) 미소기준	품목마다 다른 미소기준 적용 - 8-35%, 종량 및 공장도가격기준 등 다양	종량기준 7% (섬유협정)

다. 대체가능재료 및 물품

- 대체 사용가능한 재료 및 물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를 인정
 - 대체 사용가능한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 도입
 -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생산자는 재고 관리를 위한 구분 회계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회계기법은 당해 상품이 제조된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 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유지

라. 원산지 협정문의 기타 주요 내용

- 누적기준
 - 역내산(EU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을 도입



- 세트 물품
 -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가격의 15%이하인 경우에는 세트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중립재료
 - 제품의 생산에 사용은 되었으나 최종재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은 연료, 도구, 장비 등의 재료는 원산지 판정을 하는데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
- 직접운송
 - 한·EU 양측이 아닌 제3국(경유국)에서 ① 단순하역 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나 ②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함의

2)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주요 특징

- EU측은 그간 EU가 체결한 FTA에서 고수해온 엄격한 결합기준 원칙(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을 처음으로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수정

나. 주요 공산품 원산지 규정

품 목	원산지 기준
자동차	- 완성차: 역외산 부품비율 45% 이하 - 자동차 부품: 역외산 부품비율 50%이하 또는 세번변경기준(CTH) - 모터사이클, 트레일러 등 기타자동차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허용치 50%에 합의 · 철도차량은 세번변경기준, 자전거는 역외산 허용치 45%를 적용
기계, 전기·전자	- 세번변경기준(CTH)과 역외산 부품사용비율 45-50%중 선택

품 목	원산지 기준
의 류	- 직물기준 - 단, 섬유사 및 직물에 대해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비스코레 이온사 및 나일론 스테이플사는 일정범위 내에서 역외산을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 ※ 직물기준 (Fabric Forward) : 한·미 FTA의 원사기준(Yarn-Forward)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2단계의 공정을 거치면된다는 의미에서 이중 변형기준이라고도 함
화학제품	-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세번변경기준(CTH) 적용
비철금속	- 구리와 알루미늄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세번변경기준(CTH) 적용
신 발	- 역외산 갑피(upper)와 안창 사용(inner sole)이 인정되나, 갑피가 안창에 부착된 채로 수입된 것은 허용하지 않음. - 다만, 선택적으로 부가가치 기준 50%이하 기준 적용가능

다. 주요 농산물 원산지 규정

대상품목	원산지 기준
쌀·녹차·인삼·참기름 및 관련 제품	역내산 (완전생산기준)사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완전생산기준)
수 산 물	역내에서 어획된 것(완전생산기준)
담 배	역외산 재료는 30%까지 허용하되, 원산지 기준 면제물량확보

- 수산가공품(16류)에 대해서 양측은 일반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에 합의 하였으나,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어묵(HS 160420)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원산지 기준 면제물량을 확보
 - 단, 양식(aquaculture)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아직은 크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여 완전생산기준에 합의
- 농산물 중 라면, 국수에 대해서는 예외기준을 인정받고, 비스킷에



대해서도 원산지기준 면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수출 주력 농산물의 수출을 용이하게 함.

3) 관세 환급

- 현행 관세환급 제도를 계속 유지
 - 다만, 협정 발효 5년후부터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주요 내용

-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 기본원칙: 상대국 동종제품과의 경쟁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sourcing pattern)의 변화가 입증될 경우 발동가능
 - 구체적 요건: 1)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2)최종재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대세계 수입증가율(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국한)이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증가율을 크게 초과
 - 경감요인: 역외산 원자재의 수입증가가 국내 소비 증가 등 상대국 수출 용도 이외의 수요에 기인한 경우, 상기 증가율의 경감요인으로 고려
 - 상대국 동종제품과의 경쟁 조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절차
 - 관세환급제도 검토 결과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일방 당사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제한을 위한 협의(consultation) 요청
 - 발동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양측간 이견이 있을 경우, 한-EU FTA 분쟁 해결절차 적용(객관적인 패널(3인)을 구성하여 결정)
 - 패널에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되는 관세를 5%로 제한
 - ※ 예컨대 현재 실행관세율이 8%인 품목의 경우 5%만 환급됨.
-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검토 실시
 - 협정 발효 5년후부터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환급제도에 관해 공동으로 검토(Review) 실시

4) 개성 공단

-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 (한·미 FTA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
 - 원산지 의정서 및 동 부속서에서 규정
 - 한·EU 양측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구성, 역외가공지역(OPZ)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
 - OPZ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정 요건하에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으며, 개성공단 외 다른 지역도 OPZ로 선정 가능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요

- 구성 및 운영 :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 발효후 1년 후 개최 (매년 1회 개최 또는 양국 합의시 수시 개최 가능)
- 기능
 - OPZ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지정
 - 동 지역이 위원회가 마련한 OPZ 지정기준의 충족여부의 판정
 - OPZ의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OPZ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의 최대 비율을 설정



9 서비스 · 투자 일반

1. 개요

가. 양허안

- 한·EU FTA에서는 한·미 FTA(Negative 방식)와 달리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WTO 서비스협정에서의 양허방식)을 채택
- 우리나라의 양허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
 -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국경간 거래, 투자, 인력이동을 규율하는 “서비스 양허표”와, 비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규율하는 “설립 양허표”로 구성
- 우리나라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하였으며 EU측은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기준 총 139개 분야를 개방(우리는 115개 분야 개방)

나. 협정문

- 서비스·투자 분야는 국경간 서비스, 설립 분야(Chapter 7)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이동에 관한 분야(Chapter 8)로 구성
 - ※ 설립 :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 분야의 상업적 주재(Mode3)를 포괄하는 개념
 - Chapter 7은 7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원칙, 국경간

서비스, 설립, 인력이동, 규제체계, 전자상거래, 예외” 등을 규정

※ 자본이동(Chapter 8) 관련 내용은 후술할 금융 분야에서 상술

-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입 금지, 최혜국대우, 합리적인 국내규제, 투명성 제고 등의 의무를 포함

2. 상세 내용

1) 양허안 주요 내용

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 전반적으로 전문직(법률·회계·세무) 서비스, 사업·운송·유통·건설·금융 서비스 등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 전문직 서비스(법률·회계·세무)의 단계적 개방
- 조사 및 경비, 부동산 서비스 등의 사업서비스
- 육상운송, 우편·쿠리어 서비스 등

※ 구체적 개방 내용은 “9-1.국경간 서비스” 분야에서 후술

-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일부 통신서비스(방송중계용 국제위성전용회선 서비스)와 환경서비스(생활하수 처리서비스)는 추가적으로 개방
 - 단, 국내산업 보호 측면에서 개방 유예기간(환경:5년, 통신:2년)을 부여했으며, 특히 생활하수 분야에 대해서는 지자체·공기업 독점과 같은 포괄적 규제 권한을 유보

※ 구체적 개방 내용은 “9-1.국경간 서비스, 9-3.통신” 분야에서 후술

나. EU의 거대한 서비스·투자 시장 확보

- EU측의 개방 범위는 총 139개 분야로 우리의 115개 분야보다 훨씬 넓은 수준(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기준)



다. 주요 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 유보

- 공교육(유·초·중·고), 의료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미개방
 - 다만 한·미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법령 수준에서 개방

☞ Negative 방식을 채택한 한·미 FTA에서는 미개방 분야는 별도로 미래유보(Annex II)가 필요하나, Positive 방식에서는 양허표에 기재하지 않으면 개방되지 않는 효과 발생

- 전기·가스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현행 규제 수준을 유보함으로써 기간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유지
 - 기타, “총·포·도검류의 취급,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우, 국가소유 전자·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유보

라. 한·미 FTA plus 분야

- 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 관련, 협정 발효 2년 후에 한·EU 방송사간 방송 신호 전송에 한해 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한 상업적 협약 체결 의무 면제(국내 지점간 연결 서비스 제외)
- 환경서비스 관련, 협정 발효 5년후에 생활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경쟁입찰시 EU 기업에 대해 비차별대우 부여 개시
 - 단, 지자체·공기업 독점과 같은 포괄적 규제 권한은 유보
 - ※ 환경서비스 관련 EU측은 생활하수처리서비스에 대하여 전면개방
- 법률서비스 관련, 본국 직명(home title) 사용 허용
 - 시장접근·내국민대우 차원의 추가 양허는 아님.
 - ※ 외국법자문사법 제27조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 명칭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본점사무소의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자문사의 home title 병기 가능

3. 협정문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7.2조)

- “조치”란 법령, 규정, 절차, 결정, 행정행위 등 형태를 불문하고 협정 당사국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를 의미
 - “조치”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정부의 위임을 받아 행해지는 비정부기관의 모든 조치를 포함
 - 따라서 27개 EU 회원국 산하의 지방정부도 협정문상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위배되는 조치가 있을 경우 양허안에 유보할 필요
- “법인”은 협정 당사국의 법에 의해 조직되는 모든 형태의 법적 실체를 의미하여 설립 목적은 불문
 - 특히 실질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만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소위 “서류상 회사”는 적용을 배제

나. 협정상 의무

- 일반적 의무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제7.6조, 제7.12조)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대해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시장접근(Market Access) 제한 조치 도입 금지 (제7.5조, 제7.11조)
 - 공급자 및 설립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설립시 사업자의 법적 형태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

☞ 양허안에 표시되어 개방된 섹터(Positive 방식) 중에서도,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함 (유보)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제7.8조, 제7.14조)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대해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기타 의무

- 합리적인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제7.23조)
 -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객관적·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할 필요
- 투명성 제고(Transparency) (제7.22조)
 - 행정절차에 있어서, “신청요건의 대외공표, 신청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적정 기간 내의 처리의무” 등을 규정
- 금융 및 조세 관련 국제 기준 준수(Governance) (제7.24조)
 -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 및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국제기구(OECD, IMF, G20 등) 협약·권고 준수 노력 규정

다. 협정문의 적용 범위

-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서비스 교역 및 경제적 활동을 위한 설립을 적용대상으로 설정
 - 단, “정부조달, 보조금, 정부권한행사,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의 이동”은 공통적으로 적용 범위에서 제외
 - 그 밖에 양측은 “시청각서비스(방송서비스 포함), 연안해운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는 협정 적용대상 서비스에서 배제하는데 합의
 - 또한 “핵연료 채굴·제조·처리, 군수품 및 전쟁물자 제조” 분야의 비서비스업 역시 적용대상에서 배제

- 설립(Establishment) : 법인(자회사)의 조직·인수·운영, 지점 및 대표사무소의 설치·운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와 유사 개념
- 정부권한행사 : 시장성, 경쟁성이 결여되어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 (예 : 일반 법집행)

- Chapter 7에만 적용되는 “예외”로서 “공공안전, 공중도덕·질서,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문화재보호, 천연자원 보존,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제한 조치는 허용
 - 단, 이러한 제한 조치는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국가간 차별 수단이거나 위장된 제한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됨.
 - 국내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및 대외무역법 제5조의 교역·투자 제한 사유를 “예외”에 포함시킴으로써 규제 권한을 유지하는 효과

라. 기타 제도적 장치

- 상호자격인정(Mutual Recognition) (제7.21조)
 - 상호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자격·면허 인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직능 단체 간 논의 및 정보교류 등을 제도화
 - 양측은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호자격인정에 관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만나 관심 분야 및 권고 내용을 논의기로 합의
 - ※ 건축, 수의, 엔지니어링 등 우리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
- 우편·쿠리어 규제원칙 (제7.26조)
 - 비독점 우편·쿠리어 서비스 분야의 경쟁 보장을 위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반경쟁 행위, 보편적 서비스, 개별 면허, 규제당국의 성격”과 같은 규제 체계의 원칙을 수립함.
 - 다만,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수행하는 우편 업무(신서독점)는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인력 이동

- 상업적 주체가 허용된 분야의 “핵심인력(key personnel : 관리자, 전문인력, 사업방문자로 구성), 대졸연수생, 상용서비스판매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체류요건을 전제로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

※ 체류요건 : 관리자 및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3년까지, 사업상방문자는 1년에 90일까지, 대졸연수생은 1년까지, 상용서비스판매자는 1년에 90일까지 체류를 허용

— 특히 대졸연수생을 인력이동 대상에 신규로 포함시킴으로써 청년층의 상호 인력 교류를 촉진

- 단,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에 대해서는 추후 WTO DDA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포함시키기로 합의

■ 특별위원회 설치 (제7.3조)

- 서비스·설립·전자상거래 분야의 이행을 평가·감독하고 정보교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전체 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

9-1 국경간 서비스

1. 양허안 주요 내용

※ “국경간 서비스”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설립”을 포괄하여 기술
(다만, “금융 및 통신 서비스”는 별도 챕터에서 후술)

가. 한·미 FTA 수준의 개방

■ 전문직서비스(법률·회계·세무) 단계적 개방

-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 회계사·세무사의 경우도 유사한 방식으로 개방

- 법률 서비스의 경우 3단계, 회계·세무 분야의 경우 2단계로 추진키로 합의

< 법 률 >

- 1단계(발효) : 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 2단계(발효 후 2년내) :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
- 3단계(발효 후 5년내) : 외국로펌과 국내로펌간의 합작 및 동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 허용

< 회계·세무 >

- 1단계(발효) : 외국회계·세무 자문 허용, 외국 회계·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 2단계(발효 후 5년내) :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 허용



- 다만, 법률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외국법자문사의 본국 직명(home title) 사용을 추가적으로 허용

※ 예시 : 프랑스법 자문사는 “Avocat”, 영국법 자문사는 “Solicitor”라는 자국에서 변호사를 가리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조사 및 경비 서비스

- 국내에 설립된 법인에 한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5종류의 경비서비스를 허용

■ 우편·쿠리어 서비스

- 경제적 수요심사를 거쳐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 택배업 영위 가능

※ 우정당국의 독점 영역(신서 독점) 분야는 미개방

- 국제특송(Express Delivery Service)의 경우 현행 우편법상 무역 관련 서류 등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서류까지 확대

■ 유통서비스

- 쌀·홍삼 도소매, 및 담배·LPG 관련 소매 서비스 미개방
- 중고차 및 가스 관련 제품 도소매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부과

■ 육상운송

-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객 육상운송(시내·시외 노선버스 및 택시)은 미개방함으로써 추후 국가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의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비
- 화물운송 분야는 화물운송 시장의 공급 과잉 현상 등을 감안하여 일부(도로 유지·보수)를 제외하고는 미개방

■ 부동산 관련 서비스

-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는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할 것을 확인 하였으며, 여타 분야(개발·임대·관리·공급)는 미개방

- ※ 외국인들도 국내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 가능. “국내 자격증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나. 일부 분야 추가 개방

■ 레크리에이션 파크 서비스

-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차원에서 WTO DDA 협상시 제시한 수준보다 추가 개방

■ 시험기술분석(물리적 특성) 서비스

-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한 국내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DDA 수준 이상으로 개방

다. 환경(생활하수) 서비스

■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생활하수 처리장 운영)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외국사업자에 대한 비차별 대우 보장

- 현행법상 외국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제한이 없으며, 이미 일부 업체가 진출해 있어 사실상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당해 분야에 대해 비차별대우를 보장하는 효과만 발생

※ 2003년 프랑스계 기업인 베올리아社가 진출해 인천 송도 지역에 하수 처리장을 건설·운영 중

※ 환경서비스 관련 EU측은 생활하수처리서비스에 대하여 전면개방

- 다만, 외국 사업자의 진출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국내 업계 대응 차원에서 협정발효 후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 또한 생활하수 처리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의 폭넓은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 지자체가 직영(지자체 독점) 혹은 민간위탁 여부, 민간 위탁시의 구체적인 방법(공개 경쟁, 수의 계약 등)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있는 재량을 확보

- 외국사업자에 대한 비차별대우는 지자체가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라. 대졸연수생

- 양측은 청년 취업자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대졸연수생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
 - ※ 대졸연수생 :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자국 내 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국 소재 지사(해외지사)에 파견되어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
- 다만, 편법 취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회계·유통 등 45개 서비스 분야 및 4개 비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미양허
- 대졸연수생은 상대국 기업 소속으로 단순한 경력개발 훈련 목적으로 파견된 직원으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대졸연수생은 상대국에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므로 현지 출입국 관련 절차가 대폭 간소해지는 효과

마. EU측 양허수준

- 개방된 EU의 서비스·투자 시장을 확보하여 국내 서비스 업체의 현지 진출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
 - EU측의 개방 범위는 총 139개 분야로 우리의 115개 분야보다 훨씬 넓은 수준(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기준)
- 전반적으로 EU가 WTO DDA 협상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양허
 - 특히 ① 수의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 ② 장비 임대·유지·보수서비스, ③ 자문·조사·회의진행· 등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 ④ 위성방송 등 통신서비스, ⑤ 건설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⑥

환경서비스, ⑦ 금융서비스, ⑧ 내수운송 등 운송서비스, ⑨ 운송보조 서비스 분야 등에서 양허 수준이 높아짐.

※ 수의서비스 상호자격인정시 수의사의 현지 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

- 또한 지방 정부의 모든 비합치조치도 양허안에 표시함으로써 현지 진출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제고

2. 협정문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

-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적용대상
 - 단, “시청각서비스, 연안해운서비스, 항공운송 관련 서비스”는 협정 적용 배제
 - 시청각서비스(방송서비스 포함)를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별도의 “문화협력의정서”를 통해 “시청각 공동제작”과 같은 구체적인 이슈를 논의
 - 예외적으로 항공 관련 서비스 중 “항공기유지·보수, 항공 관련 관측, 컴퓨터예약시스템, 지상조업, 운영자포함 항공기임대, 공항운영” 서비스는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
- 협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권한행사 서비스”는 일반적인 법집행, 교정 등과 같이 상업성과 경쟁성이 결여된 분야를 의미

나. 시장접근 의무(MA) (제7.5조)

-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제한 조치의 채택 및 유지를 금지
 - ① 서비스 공급자수, ② 서비스 총거래액·자산가액, ③ 서비스 영업량·총산출량 제한 등(독점, 수량쿼타, 배타적 권리부여, 경제적 수요심사의 형태)



- 양허표에 등재된 분야 중 상기 유형과 같은 제한 조치가 있을 경우 양허표에 유보하여야 함

※ 협정문상 국경간공급시 국내 사무소 설치 등 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현지 주재(Local Presence) 조항은 없으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등 기타 의무와 불합치하는 현지주재 관련 조치가 있을 경우 양허표에 유보 필요

다. 내국민대우(NT) (제7.6조)

-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할 의무
 - 형식적으로는 동일하거나 상이한 대우라도 자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공급자와 비교하여 자국에 유리하도록 경쟁조건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
 - 즉, 내국민대우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동등대우 의무”를 의미
 - 양허표에 등재된 분야 중 이에 위배되는 제한 조치가 있을 경우 양허표에 유보하여야 함.
- 다만, 당해 의무는 “외국” 서비스 또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본질적인 경쟁상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수반하지는 않음.
 - 예를 들어 외국 건축사가 한국어나 한국의 제도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수주활동의 불이익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

라. 최혜국대우(MFN) (제7.8조)

-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할 의무
 - 즉, FTA 체결 이후, 제3국과의 경제통합협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한 경우, 그러한 개방 혜택을 FTA 상대국에게 부여 (미래 MFN)

- 다만 EU 신규가입국, EEA(EU-EFTA간 경제통합협정)와 같이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은 최혜국대우 의무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합의

-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 : 서비스, 자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공동시장(Internal market)이 존재하거나, “완전한 설립의 자유”와 “당사국간 국내입법의 통일·조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접국가와 맺은 경제통합협정을 의미

■ 다음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① 자격 인정, 면허, 금융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조치
 - ② 조세와 관련된 국제 조약(협정)
 - ③ 과거에 체결된 경제통합협정 (미래 MFN)
 - ④ MFN 면제리스트에 기재된 분야(우리나라는 운송 등 12개 분야를 MFN 면제리스트에 기재)
- 특히 MFN 적용 범위에서 협정 발효 전에 서명된 경제통합협정은 제외함으로써 미국 등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의 혜택이 자동적으로 EU에 부여되는 것을 방지
 - 반면, EU가 캐나다 등과 앞으로 체결할 경제통합협정의 개방혜택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



9-2 설립

1. 협정문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

-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당사국의 모든 조치가 적용 대상
 - 다만 “핵연료 채굴·제조·처리, 군수품 및 전쟁물자 제조, 시청각(방송 서비스 포함)서비스, 연안해운서비스, 항공운송 관련 서비스” 분야는 적용 배제
 - 그러나 예외적으로 항공 관련 서비스 중 “항공기유지·보수, 항공 관련 관측, 컴퓨터예약시스템, 지상조업, 운영자포함 항공기임대, 공항 운영” 분야는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
- 한·EU FTA 설립 협정문은 수용·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미포함
 - 현재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은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고 EU 집행위원회의 권한 밖에 있는 상황
 - 대신 향후 투자보호 관련 협상권한이 EU 집행위에 부여될 경우, Review를 통해 투자보호 관련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보호 재검토 규정”을 별도로 규정
 - ※ 한편, 우리나라는 EU 27개국 중 22개국과는 이미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가 체결된 상태여서, 기본적인 투자 보호 혜택은 동 BIT 협정문들을 통해 확보

나. 내국민대우(NT) (제7.12조)

- 상대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게 자국의 동종 투자 및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할 의무
 - 당해 의무에는 이사회 구성에 대한 국적·거주 요건 부과 금지 의무도 포함
 - ※ 내국민대우의 구체적인 내용은 “9-1. 국경간 서비스” 참고

다. 시장접근(MA) (제7.11조)

- 외국인 투자의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의무로, 설립 및 투자자에 대한 다음 6가지 유형의 제한 조치의 채택 및 유지를 금지
 - (a) 설립의 수량, (b) 거래·자산 총액, (c) 영업의 총 수량·총 산출량, (d) 외국인 자본의 참여, (e) 법적 실체·합작 투자의 형태, (f) 고용되는 자연인의 총수 등 6가지에 대한 제한 조치 금지
 - 단, (a)~(c)는 농산품의 생산 제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f)는 핵심인력(key personnel) 및 대졸연수생(graduate trainee)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한·EU FTA에서는 비서비스업(제조업, 광업 등)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접근 보장 의무가 적용
 - 우리의 기체결 FTA에서는 시장접근 보장 의무를 서비스분야에만 적용하였으나, 한·EU FTA에서는 자유화 수준 제고를 위해 그 적용 범위를 비서비스업 분야로 확대
 - 비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보장은 투자의 투명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국내 제조업체들의 현지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효과
 - 다만, 양해(Understanding)를 통해 환경보호, 도시계획 등을 위한 각종 조치에 대해서는 규제권한을 유보



시장접근 관련 양해의 주요 내용

- 과밀억제를 위한 공장설립 상한제 등 구역설정(zoning)·도시계획 및 환경 보호 관련 규제는 비차별적·비수량적 조치로서 시장접근 의무 위반사항이 아님
 - 이러한 예시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18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조)”의 공장설립 제한 조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4조)”의 오염총량제 등을 규정
 -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규제는 자유롭게 도입이 가능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①항 : 공장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설정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항 : 과밀억제 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 변경을 제한
 - (3)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14조 ①항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하는 사업장의 설치에 대한 허가제 실시

라. 양허표

- 양허표에는 개방이 이루어지는 분야와, 그 분야에서의 NT, MA 의무 관련 유보 사항이 기재됨(Positive 방식)

마. 최혜국대우(MFN) (제7.14조)

- 상대국 투자 및 투자자에게 제3국의 동종 투자 및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할 의무
 - ※ 최혜국대우의 구체적인 내용은 “9-1. 국경간 서비스” 참고

바. 투자 보호 관련 Review (제7.16조)

- 투자 자유화의 진전을 위하여, 투자 법제, 투자 환경 및 투자의 흐름에 대한 협정당사국의 검토 의무 규정
 - 협정문 내용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하며, 검토 의무는 협정의

발효 후 3년 이내 시점부터 정기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 협정문 본문 뿐만 아니라 양허리스트, MFN 예외 리스트도 검토 대상

- 투자 장애 요소의 제거를 위한 당사국간 추가 협상 의무를 규정하여 설립 챕터의 실효성을 강화
 - 수용·보상, ISD 등 투자 보호 조치에 관한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EU 집행위의 제한된 협상 권한으로 인해 투자 보호 내용이 빠진 한·EU FTA의 한계를 보완
 - 따라서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 집행위원회로 이관될 경우, 투자보호 관련 별도의 협상을 개시하여 그 협상 결과가 추후 FTA 설립 분야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용어 정의 (제7.9조)

- **(설립)** 경제적 활동을 할 목적으로 (i)법인을 구성, 인수, 유지하거나, (ii)지사(branch) 또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창설, 유지하는 행위를 의미
 - 즉,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제조업, 광업 등) 분야의 상업적 주체를 포괄하는 개념
 - 한편, “경제적 활동”의 범위에서 국경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비사업성·비경쟁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부권한행사는 제외
- **(투자자)** 투자자는 설립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
 - “지사”란 법인격은 없으나, 항구적인 외관을 지니고 있는 영업 장소를 의미



2. 양허안 주요 내용 (비서비스업 분야)

가. 수평적 양허 (공통 사항)

- **(신고의무)**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는 투자 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
- **(방위산업)** 방위산업 투자와 관련된 조치는 포괄적으로 유보
 - 한편, 외국투자자가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기발행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
- **(기타)** “외국인의 토지·농지 취득,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우, 국가소유 전자/정보시스템,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조치”는 포괄적으로 유보

나. 개별 산업별 양허

- **(에너지)** 원자력, 전력, 가스산업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한 유보 및 외국인지분취득 제한이 규정됨.
 - “원자력산업, 발전·송전·배전 및 전력의 판매 분야, 천연가스 수입과 도매 및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 관련 조치는 포괄적으로 유보
 - 한국전력공사의 외국인 지분취득은 40% 미만,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30% 미만으로 제한
- **(농, 축, 수산업)** 쌀·보리 재배업, 어업은 미양허(Unbound)하였으며, 육우사육업 종사 기업의 외국인 지분취득은 50% 미만으로 제한
- **(광업)** 해저석유광업권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보유
⇒ 비서비스업 분야의 시장접근 제한

다. EU측 양허수준

- EU측 양허안은 제조업 등 대부분의 비서비스업 투자를 개방하는 높은 수준
 - 단, 에너지 분야, 공익 산업(public utilities) 등은 그 공익성 및 민감성을 감안, 규제 권한을 유보



9-3 통 신

1. 통신협정문 주요 내용

가. 적용 범위

- 통신사업자가 전자기적 신호를 송·수신하는 기본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원칙을 규정
 - 전신, 전화, 인터넷접속 등 기간통신서비스가 적용대상이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IPTV 등 융합서비스는 제외

나. 통신서비스 시장 진입 (제7.29조)

-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간소한 시장 진입절차를 적용하되 번호, 주파수, 통신선로 설치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허가제 운영 가능
 - 허가조건, 허가기준 및 기간 등은 공개하고, 허가 거부시에는 신청자에게 사유를 서면 교부
 - 허가수수료는 해당 허가를 관리·감독·집행하는 데에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 보장장치 (제7.30조)

- 지배적 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반경쟁 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협정문상 특히, 아래와 같은 행위를 반경쟁적 행위로 명시

※ 지배적 사업자 :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

◦ 반경쟁적 교차 보조

※ 반경쟁적 교차 보조 :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

◦ 경쟁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반경쟁적 결과를 초래

◦ 다른 사업자가 서비스 공급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설비에 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

라. 상호접속 (제7.31조)

- 상호접속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간 상업적 협상에 기초하며 사업자간 상호접속에 대한 협상 기회를 보장
- 지배적 사업자는 상호접속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망의 모든 지점에서 상호접속 보장
 - 지배적 사업자 자신, 자회사 등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공
 -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이용을 보장하고 원가지향적 요율 적용 등

마. 기타 조치

- (보편적 서비스)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 (제7.34조)
 - ※ 보편적 서비스 :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로 기본통신서비스를 포함함. (예: 시내공중전화서비스)
- (규제기관의 독립성)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기관의 법적인 분리와 기능적 독립을 보장하고 충분한 규제 권한을 부여 (제7.28조)



- **(희소자원의 분배)** 주파수, 번호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 (제7.33조)

2. 양허안 주요 내용

가. 방송용 국제위성 전용회선서비스

-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 중 방송 중계 부문에 한해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협약 체결 면제(국내 지점간 연결 서비스 제외)
 -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사업장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전기통신사업법 제59조의 2)
- 상업적 협약 체결 면제 대상은 위성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방송사간 중계 링크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한정
- 국내 법제 정비 등을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 위성을 이용한 국내지점간 연결 서비스를 제외하여 국내 위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

나. 외국인 투자 제한

-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한·미 FTA 수준으로 합의
 -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49%를 유지
 - 다만, 국내 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100%까지 허용(유예기간 : 협정 발효 후 2년)
 - 또한 핵심 기간망을 보유하고 있는 KT·SKT는 간접투자 완화 대상에서 제외

9-4 금융 및 자본이동

1. 개요

- 한·EU FTA 금융협상은 한·미 FTA 수준에서 타결
 - 우리는 한·미 FTA 수준의 개방을, EU측은 기존 멕시코, 칠레와의 FTA보다 개선된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명시
- 협상타결로 인해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현지법인 및 지점에 대한 금융시장개방은 상호경쟁을 촉진시켜 국내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 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금융시장 안정·경기부양 등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명시
 - 금융시장 안정·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조치 및 외환위기 등의 위기시 외화유출을 통제하는 단기세이프가드의 발동
 -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금융기관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협정문 예외로 취급

2. 금융협정문 주요 내용

가. 금융협정의 예외사항 (제7.44조)



- “중앙은행의 기능”, “통화관련 국가의 기능” 등 다음의 국가 고유기능에 대해서는 협정문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공공퇴직제도(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 중앙은행(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통화관련 국가기관(예: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및 국가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금융기관(예: 산업은행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 국가의 보증을 받거나 또는 예산을 지원받는 활동과 서비스도 협정문의 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나. 건전성조치 인정 (제7.38조)

- 금융소비자 보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건전성조치는 언제라도 도입할 수 있음.
 - 예금주, 주주, 금융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제도
 -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등

※ 단, 협정문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못함.

다.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제7.43조)

- 글로벌한 분석·평가업무를 본·지점간에 공동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을 허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정비 등을 위해 유예기간(한·EU FTA 발효 후 2년, 단 기타 FTA보다 늦지 않을 것)을 두고 개방
 - 또한, 우리 금융당국은 한·미 FTA와 동일하게 다음의 건전성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음.
 - ① 개인정보보호
 - ②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 금지
 - ③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해외수탁기관에 대한 검사권 수행

④ 적절한 수준의 전산시설 유지

라. 신금융서비스 (제7.42조)

- 신규 금융상품 도입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 신금융서비스를 허용
 - 신금융서비스란 상대국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을 의미
 - 신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
 - 우리나라에 있는 EU 금융기관 현지법인·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급 가능 (국경간 거래를 통한 공급을 불가)
 - 우리 현행 금융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 국내 금융감독당국이 신금융서비스 개개 상품별로 심사하여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운영 가능

3. 자본이동채터 주요내용

가. 국경간 자금이동

- 경상 및 자본거래로 인한 자금의 국경간 이동을 허용 (제8.1조 및 제 8.2조)
 -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금이동에 대한 제한이 가능 (제8.3조)
 - 공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부도, 지급불능, 예금자 보호, 주식 등의 거래, 규제당국의 법집행으로서 금융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나. 단기세이프가드 (제8.4조)

-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를 다음의 조건하에 합의



- ① 발동기간은 6개월 이내이나,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총1년)
※ 단, 필요시 EU측과 협의를 거쳐 추가연장 가능
- ② 몰수(confiscatory) 금지
- ③ 이중 환율제(dual exchange rate) 금지
- ④ 상업적·경제적·금융상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회피
- ⑤ 일시적이어야 하며,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
- ⑥ 관련기관에 의해 신속한 통보 등

4. 양허안 주요내용

우리 금융양허안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법령 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없음.

■ 국경간 금융서비스 개방

- 지점·현지 법인의 설립 없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경우, 현재도 허용되어 있는 무역관련 보험서비스(수출입 적하보험 등)와 금융부수서비스(보험자문 등)에 한정하여 개방
※ 우리나라에 국경간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원하는 해외 금융기관이 우리 금융감독기관의 허가(authorization)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국책금융기관의 취급

-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에게 부여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한·EU FTA 체결 이후에도 유지 가능
※ 국책금융기관 :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한국주택금융공사
-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정리금융공사, 예보, 신보, 기보는 정부자체기능으로 인정받음.

■ 방카슈랑스 판매방법의 제한

-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관련 제한(은행별 영업직원의 수 및 동일

보험회사 상품의 판매비율 제한 등)을 한·미 FTA와 동일하게 유지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 은행별 영업직원수는 설계사를 제외하고 2인 이내, 동일 보험회사 상품 판매비율은 원칙적으로 25%로 제한

- 원화현물환 중개사 제한
 - 외환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현행 2개 중개사만 원화현물환 중개업무를 담당하도록 제한
- 국내 은행 지분소유 제한
 - 국제적인 신용도를 인정받은 은행에 한정하여 10% 이상의 국내은행 지분취득이 가능하도록 제한
- 증권 및 파생상품 청산·결제기관 제한
 - 상장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청산 및 결제업무는 증권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만이 수행가능
- 증권·선물시장의 설립 및 운용기관 제한
 - 증권선물시장의 설립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에게만 허용
- 외국금융기관 지점의 영업기금 해당자산의 국내보유 의무
 - 본점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점의 영업기금에 해당되는 자산은 반드시 국내지점이 보유해야함.
- 외국은행 지점의 개별인가
 - 무분별한 지점확대로 인한 금융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은지점 신설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규정



9-5 협정문 기타

1. 문화협력의정서

가. 서문

-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혜택 등 문화협력 증진을 위해 문화협력 의정서를 FTA 협정문의 일부로 포함
-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을 문화협력의정서 발효요건으로 하였으나, 문화다양성 협약 가입 여부 및 시점은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시점에 따르도록 함.
 - ※ 2010년 4월 1일 우리나라가 문화다양성 협약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문화협력의정서도 전체 협정 발효 시점에 함께 발효됨.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 2005.10월 채택되고, 2007.3월 발효한 협약으로 ① 당사국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권리 인정, ② 시청각 공동제작 등 국제협력 및 정보공유, ③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한·EU 간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 시청각 분야에서 협력의 틀을 구축
 - 서비스·설립·전자상거래 챕터의 시청각 분야 적용을 배제하고 동 분야에 대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문화협력의정서에서 규정

-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와 관련된 조건의 개선을 위해 협력
- **문화영역 전반의 협력**
 - 문화 및 시청각 분야 이해 증진과, 정보교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화채널 설치 (제2조)
 - 예술가, 배우, 기술자, 문화전문가 및 공연자 등에 대한 입국 및 체류 원활화, 이들의 훈련과 지속적인 접촉을 위해 노력 (제4조)
 - 입국 및 체류는 1년에 90일까지 허용
- **문화협력위원회 설치 (제3조)**
 - 문화협력의정서의 이행 관련 사항을 감독·협의를 하는 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 대한 자문을 위해 문화 및 시청각 분야의 대표로 구성된 국내 자문단그룹 구성
 - 협상 전체의 이행을 감독하는 무역위원회 대신 문화협력위원회가 문화협력의정서 이행에 대한 전속적 감독권을 행사
- **독립적인 분쟁해결절차 적용 (제3조의2)**
 - 무역위원회가 분쟁해결절차의 진행을 관할하는 일반적인 분쟁과 달리 문화협력의정서 관련 분쟁의 경우 그 절차의 진행을 문화협력위원회가 관할
 - 통상 분야 전문가가 아닌 문화 관련 전문가를 중재위원으로 선정토록 하고, 중재판정 결과를 이행함에 있어 문화 분야와 기타 분야간의 교차보복을 상호 금지
- **시청각 공동제작**
 - (정의) “공동제작”이란 의정서 상의 조건에 따라, 우리나라와 EU 제작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투자·제작된 시청각물을 의미 (제5조제1항)



- **(혜택)** 우리나라와 EU 회원국 간의 공동제작물에 대해 각국에서 시장접근 관련 제도상 혜택을 부여 (제5조제4항, 제5항)
 - 문화협력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제작물은 우리나라와 EU 회원국에서 자국물로 인정되어, 각 당사자 영역에서 쿼타제도 우회 가능
 - 우리나라와 EU 회원국 간의 새로운 공동제작협정 협상 및 기존의 공동제작협정 이행을 장려하고, 공동제작 시청각물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
- **(인정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 및 EU 제작물로 인정하여 각 당사자의 시장접근 관련 제도상의 혜택 부여 (제5조제6항)
 - **(애니메이션)** EU 회원국 3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 재정·기술·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5% 이상인 경우
 - **(영화 등 기타 시청각물)** EU 회원국 2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 재정·기술·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0% 이상인 경우
 - ※ EU 회원국 국적별 기여도는 각 10% 이상이어야 함.
- **(혜택부여 기간)** 혜택부여는 의정서 발효 후 3년 동안 인정되며, 일방이 3개월 전 종료를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혜택기간은 자동 갱신 (제5조제8항)
 - 문화협력위원회는 혜택기간 만료 6개월 전 이행결과 평가
- **(모니터링 및 검토)** 공동제작 이행에 대한 국내 자문 그룹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이행과정에 대한 문화협력위원회의 검토 권한 규정 (제5조제9항)
- **(법령변경 시 혜택정지 관련)** 타방의 법령변경으로 공동제작물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 일방은 두 달 전 타방에게 통보하여 혜택부여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조치에 앞서 상대방과 문화협력위원회에서 법령변경의 성격과 영향에 대하여 논의 및 검토함. (제5조제10항)

■ 기타 시청각 협력

- (시청각 관련 협력) 페스티벌, 세미나 등을 통한 시청각 활동 증진, 방송분야 협력 증진, 시청각 기술 관련 국제 및 지역적 기준 사용 증진, 기술 장치 및 설비 임대 및 리스 증진, 시청각 자료의 디지털화의 증진 등을 규정 (제6조)
- (기술 장치 및 설비의 일시적 도입) 영화 및 방송 촬영을 위한 현지 촬영 증진 및 국내법에 따라 영화 및 방송 촬영을 위한 기술 장치 및 설비의 일시적 도입 허용 (제7조)

■ 기타 문화 협력

- (공연예술) 공연자 간 인적교류 및 훈련 등 접촉 확대, 공연예술 공동제작 증진, 적절한 표준화 기구를 통한 국제 극장기술표준 개발 및 무대표시 사용의 증진 (제8조)
- (출판물) 박람회·세미나 등 개최, 공동출판 및 번역 증진, 전문가 교류 (제9조)
- 문화재 및 역사 유산에 대한 보호를 위한 협력 증진 (제10조)

2. 전자상거래

가. 개요

- 전자상거래(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물)의 구분
 - 전자상거래 협정문은 서비스·투자 챕터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이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물의 취급(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
- 포괄적 협력조항 중심으로 협정문을 구성



나. 주요 내용

-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물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 (제7.48조)
 - 기타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적용
 - ※ 1998년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각료선언”을 채택하여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 양측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문제들에 관한 대화채널(dialogue)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및 이행 정보를 교환 (제 7.49조)
 - 전자인증서비스의 촉진, 소비자보호, 스팸메일 등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전자 상업통신에 대한 대우 등

10 정부조달

1. 개요

- 일반 정부조달 시장은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양허 이상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음.
- 민자사업 시장은 양측 모두 1,500만 SDR(229억원) 이상의 사업 개방
 - EU는 중앙정부 및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 우리는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일부(서울시·부산시·인천시·경기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 개방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 정부조달에 관한 WTO 복수국간 협정으로서 한국과 EU 모두 회원국임.
 - 2007.11월 GPA 개정협정안이 회원국간 확정되었으나, 진행 중인 양허 협상과 연계되어 현재 미발효 상태
- GPA 개정 협정안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행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 이미 반영, 시행

2. 상세 내용

1) 일반 정부조달 시장

- 현행 GPA 양허 이상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하되, 추후 GPA상 양허 내용 변경시 한·EU FTA에도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규정(제



9.2조제1항)

- 일반 정부조달 절차는 개정 GPA의 절차 규정을 적용(제9.1조제4항)
 - 입찰참가 및 낙찰시 상대국내 과거 조달실적 요구 금지 조항을 포함 하되, 필수적인 경우에는 과거실적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

한·미 FTA와의 일반 정부조달 시장 양허수준 비교

한·EU FTA	한·미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GPA 양허수준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양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 : 현행 GPA의 20만불(2억원) 수준에서 10만불(1억원)로 인하 - 건설서비스 : 현행 GPA 양허수준(500만 SDR)과 동일

2) 민자사업

가. 민자사업 양허 범위

- 양측 모두 1,500만 SDR(229억원) 이상의 민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개방
(제9.2조제2항 및 부속서9 제3조)
 - 우리 :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일부(서울시·부산시·인천시·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 EU : 중앙정부 및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 ※ 국내 민자사업 시장은 현재 국내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11항)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 등 모든 사업에 외국인의 참여가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개방

한·미 FTA와의 민자사업 양허수준 비교

한·EU FTA	한·미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모두 1,500만 SDR(229억원) 이상의 민자사업 개방 - 우리 :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민자사업 개방 - EU : 중앙정부 및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민자사업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모두 중앙정부 대상 500만 SDR(76억원) 이상의 민자사업 개방

나. 민자사업 정의규정

- 민자사업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양측간 개념이 상이하어 각자 별도로 민자사업 정의 규정(부속서9 제1조)
 - 우리는 한·미 FTA에서 규정한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BOT: Build-Operate-Transfer)” 정의 사용(부속서9 제1조제1항)
 - EU는 EU통합공공조달지침에서 규정한 “공공사업실시협약(Public Works Concessions)” 정의 사용(부속서9 제1조제2항)

민자사업의 소유권 귀속 방식

- EU는 계약기간동안 시설의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
- 우리는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기관에 귀속되며, 계약기간동안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

다. 민자사업 절차규범

- 비차별의무 및 투명성 관련 일부 절차적 의무(최소한의 기본 정보를 포함한 입찰 및 낙찰 공고, 이의신청절차)만을 규정하고, 그 외 민자사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 절차는 각자 국내법 적용(부속서9 제2조)
 - 국내 민간투자법상 중소기업보호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호조치 규정 명시(부속서9 제2조제6항)



11 지적재산권

1. 개요

- 지적권 챗터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
 - Section A는 챗터의 목적, 의무의 성격 및 범위, 기술이전 및 권리 소진을 규정
 - Section B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특허 및 그 밖의 규정의 6개의 Sub-section으로 구성
 - Section C는 민사구제, 형사집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그 밖의 규정의 4개의 Sub-section으로 구성
- 양측은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한국 64개, EU 162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

2. 상세내용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가. 저작권 보호기간

- 저작권 보호기간(기준: 50년)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되, 이행을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제10.6조 및 제10.14조)
 - ※ 한-미 FTA는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발행 또는 창작 시점 기준)의 보호기간도 70년으로 연장

나. 방송사업자의 권리

- 방송사업자에게 "TV 방송물을 상영하는 댓가로 입장료를 받는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제10.9조제5항)
 -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기관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1961)에서도 부여하고 있는 권리로서, 우리나라는 2008.12.18 동 협약 가입 (2009.3.18일 발효)
- 권리자 추정 규정을 "방송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제10.53조)
 - 민사소송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방송사업자'로 표시되어 있는 자를 방송물에 대한 저작권인접권자로 추정
 - ※ 한·미FTA에는 저작물, 실연 및 음반에 대한 권리자 추정 규정은 있으나, 방송물에 대한 권리자 추정 관련 규정은 없음.

다. 재판매권

- 협정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에서의 재판매권 도입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제10.10조)

재판매권 (Artists' Resale Rights)

- 미술품이 재판매 될 때 작가(저작자)가 판매액의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도입
- 현재 기초예술이 발달한 유럽을 중심으로 4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음. 1948년 베른협약에서도 채택되었으나, 각국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도입

라.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 등의 제공 등의 행위 금지(제10.12조)
 - 단,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의 경우, 고의·과실이 없으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



-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국내법 및 국제규범에 따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

※ 한·미FTA에는 예외 및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통제조치로, 이용통제와 접근통제로 대별됨.
 - 이용통제(use control) : 저작물의 복제, 전송, 배포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통제
 - 접근통제(access control) :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
 - ※ 예 : 인터넷상의 웹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아이디(ID) 및 패스워드를 입력토록 하는 것

마. 권리관리정보

-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아래 행위 금지(제10.13조)
 -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 고의로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저작물 등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 한·미 FTA는 상기 외에도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사실을 알고 동 권리관리정보 자체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해 수입하는 행위도 금지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 저작물, 권리자, 이용조건 등을 식별하는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지칭

2) 상표

- 상표등록 거절이유 의 서면통지, 등록거절에 대한 이의제기와 사법적 불복청구 기회 부여 및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 부여(제 10.15조)

-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대하여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은 제한적 예외 인정(제10.17조)

협정상 의무의 이행주체

- 기본적으로 협정상 의무의 이행주체는 EU의 경우, 유럽공동체 및/또는 개별 회원국이나, 상표·디자인의 경우에는 이행주체가 유럽공동체로 한정됨.
 - 즉, EU측은 유럽공동체에 등록되는 상표·디자인에 대해서만 한·EU FTA상의 의무를 부담하며, 개별 회원국에 등록되는 상표·디자인은 적용대상이 아님.
 - ※ EU의 상표·디자인제도는 개별 회원국에 등록되는 상표·디자인과 유럽공동체에 등록되는 상표·디자인의 이원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됨. 개별 회원국에 등록된 상표·디자인은 개별 회원국내에서만 보호를 받는 반면, 유럽공동체에 등록된 상표·디자인은 EU 전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 지리적 표시(GI)

지리적표시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 지역, 지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 하는 표시

가. 지리적 표시 보호숫자

- 양측은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한국 : 64개, EU : 162 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
 -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범위는 농산물 및 식품(이하 농식품), 포도주(착향 포도주 포함), 증류주로 한정



양측의 지리적 표시 보호숫자

	농식품	포도주	증류주	합계
한국	63	0	1	64
EU	60	80	22	162

※ 양측의 주요 지리적 표시

- 한국: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진도홍주, 고창복분자 등
- EU : 보르도, 부르그뉴, 샴페인, 꼬냑, 스카치위스키, 까망베르드노르망디(치즈) 등

나.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준

- 부속서에 기재된 양국의 지리적 표시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부터 보호됨 (제10.21조제1항).

- ① 상품의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 ② 진정한 산지가 표시되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당해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유사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유사상품의 범위는 WTO TRIPS 협정 제23조에 따라,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를 포도주에 쓰는 경우,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를 증류주에 쓰는 경우에 준하여 해석(따라서,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인 샴페인을 TV와 같이 포도주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쓰는 것은 가능)

- ③ 파리협약 제10조의 2의 의미 내에서의 불공정경쟁을 구성하는 행위

※ 파리협약 제10조의 2(불공정경쟁)는 산업 및 상업상 정직한 관행에 어긋나는 모든 경쟁행위를 불공정경쟁행위로 정의, 불공정경쟁에 대하여 회원국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할 것을 규정(특히,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허위주장,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

- 상기 세 유형의 행위 중 ①,③은 TRIPS협정 제22조 수준의 보호에 해당되나, ②는 TRIPS협정 제23조 수준의 보호에 해당

- TRIPS협정 제23조는 포도주·증류주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만 상품의 출처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한·EU FTA는 농식품에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농식품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준을 강화

※ WTO TRIPS 협정 제22조(모든 지리적 표시에 대해 적용)는 대중에게 출처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23조는 특히, 포도주·증류주 지리적 표시를 표시된 지역에서 유래하지 않는 포도주·증류주에 사용하는 경우, 출처오인 여부를 불문하고, 1)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거나 2)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3)“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

다. 상표와의 관계

- 선행상표(한·EU FTA 발효 전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 사용에 의해 확립된 상표)의 사용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상관없이 보장(제10.21조제5항)

※ 사용에 의해 확립된 상표 :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의미

- 협정발효 후, 지리적 표시의 보호범위를 침해하는 상표가 유사상품에 출원될 경우, 거절 또는 무효의 대상(제10.23조)

※ 까망베르, 모짜렐라, 에멘탈, 브리 등은 지리적 표시가 아니라 제품의 유형을 나타내는 일반명칭으로서 EU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상관없이 계속 사용 가능

- 예컨대, 프랑스산 치즈의 지리적 표시인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Camembert de Normandie)의 경우,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부분은 “노르망디”로서, 치즈의 종류를 나타내는 “까망베르”는 계속 사용 가능

라. 지리적 표시의 추가

- 협정발효 후에도 합의에 의하여 한·EU FTA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부속서에 추가 가능(제10.24조)



- 상대방의 지리적 표시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부당한 지연없이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

마. 작업반의 구성

- 양측은 지리적 표시에 관한 협력 및 대화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 지리적 표시의 추가 및 삭제, 지리적 표시에 관한 입법 및 정책 관련 정보교환 등을 수행하기로 합의(제10.25조)

4) 디자인

- 등록디자인 및 미등록외관(미등록디자인)에 대하여 각자의 현행법 수준에서 보호를 부여(한·미 FTA에는 디자인 관련 규정 미포함)
 - ※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미등록외관(unregistered appearance)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나, EU의 경우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이사회 규칙」에 의하여 등록디자인 및 미등록디자인 모두 보호
- 등록디자인에 부여되는 보호
 - 등록디자인의 권리자는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품목을 제작·판매·판매를 위한 제공·수입·수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보유(제10.28조)
 - 단, 그러한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또는 공정한 무역관행과 양립하지 않을 것을 요구
 - 최소 15년간의 보호를 부여(제10.30조제1항)
- 미등록외관에 부여되는 보호
 - 미등록외관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할 의무 부여(제10.29조)

- 최소 3년간의 보호를 부여(제10.30조제2항)

5) 특허

- 의약품 판매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제10.35조)
 - 의약품의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단축된 특허기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한·미 FTA와 동일)
- 의약품 자료보호(제10.36조)
 - 신약의 판매허가를 얻기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로서 TRIPS협정 제39조를 충족시키는 자료의 경우, 최초 판매허가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한·미 FTA와 동일)
 - ※ TRIPS 협정 제39조(미공개정보의 보호)는 제3항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자료에“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될 것(origination which involves a considerable effort)”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FTA에도 그대로 반영
- 식물보호제품(농약) 자료보호(제10.37조)
 - 식물보호제품의 판매허가를 얻기 위해 최초로 제출된 자료의 경우, 최초 판매허가일로부터 최소 1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한·미 FTA와 동일)

6)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전승

- 자국의 법에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 사용과 관련된 토착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혁신 및 관행을 존중하고,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의 공유를 장려(제10.40조제1항)
 - WIPO(세계지적재산기구), WTO(세계무역기구), CBD(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 토론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다자간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검토(제10.40조제2항, 제3항)

7) 집행

가. 민사구제

- 정보제공명령 권한(제10.45조)
 - 사법당국이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침해자 또는 협정상 규정된 그 밖의 다른 인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근원 및 배포망에 관한 정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
- 사법당국에게 지재권 보호 관련 각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부여 의무 규정
 - 지재권에 대한 임박한 침해를 예방하거나 권리의 계속적 침해를 금지하거나 또는 침해의심 물품을 압류하기 위한 중간금지명령(제10.46조)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폐기 및 상거래에서의 제거, 침해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료 및 도구의 폐기 명령(제10.47조)
 -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권리침해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제10.48조)
 - 금전적 보상 지불명령(제10.49조)
- 중개자에 대한 중간 금지명령 및 금지명령(제10.46조제1항, 제10.48조제2항)
 - 중개자의 서비스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상표권·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제3자에 의해 이용될 경우, 권리자가 동 중개자에 대해서도 중간금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중개자의 범위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으로 정하되, 침해물품을 배달하거나 배포한 자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를 포함

- 손해배상(제10.50조)

- 사법당국이 손해배상액 산정시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고, 적절한 경우, 대안으로서 침해자가 지적재산권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였다면 지불하였어야 할 사용료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일괄지급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
- 상표권 및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의 경우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

나. 형사집행

-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와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의 경우 형사절차 및 처벌을 부여하도록 규정(제10.54조)
 -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의 경우에는 자국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 도입여부를 고려(제10.55조)
- 형사절차 및 처벌의 유형 규정
 - 위조 또는 복제상품, 관련 재료 및 도구, 증거서류 및 그 밖의 침해 행위와 관련된 자산의 압수(제10.58조)
 - 징역형 또는 벌금형(제10.59조)
 - 위조 또는 복제상품, 관련 재료와 도구 및 그 밖의 침해행위와 관련된 자산의 몰수(제10.60조)

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단순도관/캐싱/호스팅), 유형별로 지적권 침해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점을 감안, 차등화된 면책규정을 적용(제10.63조, 제10.64조, 제10.65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유형

- 단순도관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단순전송
 - 캐싱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효율적 전송을 위한 정보의 자동적, 중개적, 임시적 저장
 - 호스팅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저장(한·미FTA상의 게시판 기능에 해당)
- ※ 한·미 FTA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① 단순도관, ② 캐싱, ③ 웹사이트 링크 및 ④게시판 기능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책임수준을 차별화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아래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를 도입할 수 있음을 규정(제10.66조제2항)
 - 지재권 침해행위, 서비스이용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 및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라. 국경조치

- 통관보류조치 적용대상을 현행 “상표권·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상품”에서 “특허·디자인·지리적 표시·식물신품종권 침해상품”에까지 확대(제10.67조)
 - 단,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 시행을 위해 사전준비가 필요함을 고려, 협정 발효 후 2년간 시행 유예
- 적용절차도, 환적의 경우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조치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통관보류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현행 국내법 및 한·미 FTA와의 비교

	관세법	한-EU FTA	한미 FTA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 ◦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 ◦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상품 ◦ 특허, 디자인, 지리적표시, 식물신품종권 침해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 ◦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 상품
적용 절차 (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에 의한 통관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 및 이해관계자의신청에 의한 통관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에 의한 통관 보류



12 경쟁

1. 개요

- 경쟁챕터는 경쟁섹션(SectionA)과 보조금섹션(SectionB)으로 구성
- 경쟁섹션은 경쟁법 집행 관련 원칙 및 경쟁당국간의 협력, 공기업 및 국가독점의 의무 등을 규정
- 보조금섹션은 금지보조금의 유형, 투명성의무, 적용범위 등을 규정

2. 상세내용

1) 경쟁

가. 원칙 및 이행

- 시장경쟁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경쟁제한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포괄적 경쟁법 및 경쟁법 집행을 책임지는 경쟁당국 유지 의무를 규정(제11.1조, 제11.3조)
 - 특히,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경쟁제한적 행위는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 한·EU FTA와 양립하지 않음을 명시
 - 반경쟁적 성격의 기업간 합의, 사업자 단체의 결정 및 동조적 행위
 -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 반경쟁적 성격의 기업결합

※ 동 행위들은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

○ 경쟁법 적용의 투명성·적시성·비차별 원칙을 규정

나. 공기업 등에 대한 국내 경쟁법 적용

■ 공기업 및 특별 또는 배타적 권리를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기업도 경쟁법의 적용대상임을 규정(제11.4조)

○ 단, 경쟁법 적용이 공기업 등의 임무 수행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경쟁법 적용 배제 가능

특별한 권리

당사국이 객관적·비례적·비차별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허가 받은 기업의 수를 둘 이상으로 지정·제한하거나(하나인 경우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 또는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여타 기업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또는 규제적 우위를 주는 경우를 의미

※ 경쟁챕터에서 특별 또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기업을 해소하거나 공기업을 민영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님.

다. 상업적 성격의 국가독점에 대한 비차별 의무

■ 국가독점이 상품을 판매·구매하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경우, 비차별 의무를 부담(비차별 의무는 내국민대우 의무로 한정)(제11.5조)

※ 경쟁챕터에서 국가독점을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님.

○ 단, 정부조달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조달챕터상의 권리·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용



라. 협력 및 분쟁해결

-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공동체간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2009.7.1 발효)에 기초한 집행협력, 통보, 협의,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양측이 집행정책 및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협력할 것을 규정(제11.6조)
- 경쟁분야에서 규정된 의무는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배제(제11.8조)

2) 보조금

가. 원칙 및 정의

- 원칙
 - 양측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된 경쟁왜곡을 제거 또는 시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합의(제11.9조)
-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제11.10조)
 -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은 WTO 보조금협정 제1조(보조금의 정의) 및 제2조(특정성)에 따름.

나. 적용범위(제15조)

- 서비스, 농·수산 보조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서비스 분야 보조금의 경우 다자차원에서의 발전을 고려하면서, 서비스 분야에 적용될 보조금 규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정발효 후 3년 내에 의견교환

다. 금지보조금(제11조)

- 아래 2가지 유형의 보조금을, 양측의 국제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도 내에서, 금지보조금으로 규정 (제11.11조)

※ 객관적 기준 및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중소기업 보조금은 제외

- 기간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무제한적인 보증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 상당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부실기업을 신뢰할 만한 회생계획이 없이 지원하는 보조금(일시적 유동성 지원이나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 보상 및 석탄산업 지원은 예외)

- 상기 두 유형의 보조금은 WTO보조금협정상의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요건 및 효과를 WTO보조금협정상의 조치가능보조금과 유사하게 규정함으로써, 추가적 의무부담은 실질적으로 없음.

※ WTO 보조금협정상의 금지보조금은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2종류임.

라. 투명성 및 WTO협정과의 관계

- 투명성(제11.12조)
 - 매년 WTO 보조금 협정상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총액, 유형, 분야별 분배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정보제공 요청권을 부여
- 당사국은 상대방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WTO 협정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역구제를 적용하고,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유지(제11.13조)



13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1. 개요

- 국제노동기구(ILO)의 1998년 선언상 의무를 준수하고, 양당사자가 동시에 비준한 다자간 환경협정(MEA)의 의무 이행
- 국내법 적용 및 집행시 무역과 투자의 촉진을 목적으로 보호수준 저하금지
- 협정이행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측이 각각 자문단체를 설치하여 운영

2. 상세 내용

가. 국제노동기준 핵심원칙 준수 의무 (제13.4조)

- “2006년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각료 선언”을 통해 합의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일자리의 중요성 재확인
- 「1998 ILO 선언」 상의 핵심노동기준 준수 의무
 - 「1998년 ILO 선언」 상 핵심노동기준에 관한 원칙(principles)을 국내법 및 관행에 존중, 증진, 실현할 의무 규정
 - ※ 「1998년 ILO 선언」 상 핵심노동기준 :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철폐

■ ILO 8개 핵심협약 및 이행장려협약 비준 및 준수노력 경주

※ ILO 8개 핵심협약 : 「1998년 ILO 선언」 상 핵심노동기준에 관한 8개 협약 (제100호 남녀 동등보수 협약, 제111호 고용·직업상 차별금지 협약, 제138호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 우리나라는 이중 제100호 남녀 동등보수 협약, 제111호 고용·직업상 차별금지 협약, 제138호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에 가입

나. 다자간 환경협정(MEA)의 의무 이행 (제13.5조)

■ 이행 의무대상 다자간 환경협정(MEA)

◦ 효과적인 이행 의무 대상이 되는 다자간 환경협정(MEA)은 양당사자가 모두 비준한 협정에 한정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기 합의 도출

※ 한·미FTA의 경우 양당사자가 동시에 비준한 7개 MEA에 한정

■ 기후변화협약 이행공약

◦ 발리 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 따라 향후 국제기후변화 체제 논의에 협력하기로 합의

- 각주에 “기후변화에 대한 UN 기본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UNFCCC 결의-1/CP.13”이라고 명시

다. 자국법 등의 적용 · 집행상 보호수준 저하금지 (제13.7조)

■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 노동·환경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것을 명시

■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법상 노동 및 환경의 보호수준 약화 또는 저하시켜서는 안 됨을 명시



- 동 조항은 국내법 적용, 집행에만 해당되므로 필요시 입법을 통한 보호수준 변경은 허용

※ 제7조 제목(법·제도·기준의 적용 및 집행관련, 보호수준 유지)은 EU 회원국중 일부 국가에서 노동기준이 단체교섭을 통해 설정되는 상황을 반영, 법(laws), 규정(regulations)과 함께 기준(standards)도 제목에 포함

라. 이행 메커니즘 (제13.12~13.15조)

- 협정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일반 분쟁해결절차 대신 1차적으로 정부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에 회부하도록 하여, 양측간 협의를 통한 협정의 이행을 강조
 - ※ 정부간 협의 : 협정이행의 중심체로써 정부간 접촉창구(Domestic Contact Point) 및 고위급 관리가 참가하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립
 - ※ 전문가 패널 : 전문가 패널의 결정은 법적구속력 없는 권고에 해당
- 협정이행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측이 각각 자문단체(Domestic Advisory Group, 노동/환경 분리하여 설치가능)를 설치하여 운영
- 시민사회대화체로 양국의 자문단체 구성원이 만나는 시민사회포럼(Civil Society Forum)을 개최하여 동 챕터의 이행관련 논의
 -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년에 1회 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기로 하고, 포럼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한·EU FTA 협정 발효이후 일년 이내에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결정
 - 시민사회포럼에 참여하는 대표는 각국의 자문단체가 균형 잡힌 대표성(balanced representation of relevant stakeholders)을 반영하여 자문단체 멤버 중에서 선택
 - 각국 정부는 시민사회포럼에 지속가능발전 챕터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포럼의 의견은 직접 또는 자문단체를 통해 각국 정부에 제출

정부간 협의(Government Consultations)

1. 협의는 한 당사국이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시작
2. 국제노동기구 또는 관련 다자간 환경 단체나 기구의 활동을 반영하도록 하며, 양측 합의시 이들 단체나 기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음
3. 추가 논의 필요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소집 요청, 요청시 신속하게 회합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결정은 공개 가능)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1. 협의요청서를 전달한 90일 이후 정부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패널 소집 요청 가능, 당사국의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후 2개월내 소집
2. 패널 설치 요청을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전문가 명단에서 각 당사국이 1명씩 전문가 선정
 - ※ 협정 발효전 의장으로 역임할 수 있는 5명(비당사국 국민)을 포함, 관련 전문가 15명의 명단 확보
3. 전문가 패널은 전문가 선출이 완료되면 90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 보고서를 제출 (전문가 패널 권고의 이행상황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감시)

바. 지속가능발전 협력사업 (제13.11조)

- 한·EU FTA 협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회, 환경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 인정,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기반 마련



14 투 명 성

1. 개 요

- 투명성 분야는 우리 국내법상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위주로 구성
- EU측으로서는 구체적인 투명성 조치 관련 규정을 독립된 장 (Chapter)으로 구성한 최초의 FTA라는 점에 의의
 - ※ SPS(제5.5조), 무역원활화(제6.5조), 서비스 및 설립(제7.22조, 제7.39조), 지속가능발전(제13.9조) 및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제3조)상의 투명성 조치는 각 해당 부분에서 기술

2. 상세 내용

가. 목적

- 경제주체들에게 효율적이고 예견 가능한 규제환경 조성

나. 적용범위

- FTA의 규율대상인 사안에 영향을 주는 일반조치에 투명성 챕터 적용

다. 공표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수정하기 전에 그 목적 및 이유를 포함하여 사전에 공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을 지정매체를 통하여 공표

라. 문의창구(Enquiry Point)의 지정

- 당사자는 제안된 또는 시행중인 법령 등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제도를 유지 또는 설립하고, 관련 연락창구를 지정 또는 설립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
 - ※ 현재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문의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제도를 이미 시행 중
- 법령 적용과 관련된 민원회신에 대하여서는 각국 국내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기로 합의

마. 행정절차

- 행정절차의 직접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개시 시점, 절차의 성질, 법적 근거 및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등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개진 기회 부여

바. 기타

- 사법·준사법적·행정적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적법 절차를 보장
- 규제품질 등의 향상을 위한 당사자간 협력을 명시
- 자국민 또는 제3국민에 대하여 적용하는 투명성 기준을 다른 쪽 당사자의 이해관계인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 전반적인 내용은 한·미 FTA 수준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
- 입법예고기간은 “충분한 시간”으로 규정



15 분쟁해결

1. 개요

- 분쟁해결절차는 WTO 분쟁해결절차 및 기체결 FTA와 유사하게 “① 당사국간 협의 → ② 패널 설치 → ③ 패널 판정 보고서 제출 → ④ 패널 판정의 이행”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규정
- 특정 조치가 FTA와 WTO 규범을 동시에 침해하는 경우, FTA와 WTO협정상 동일한 의무(identical obligation)의 위반을 제기하는 경우가 아닌 한, FTA 절차 또는 WTO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되, 선택한 절차가 종료하면 나머지 절차의 개시 허용
- 긴급을 요하는 사안, 부패가능상품 및 계절상품 등에 대해 신속한 패널절차를 도입
- 협정의 이행 및 분쟁해결절차에서 투명성 및 대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제출을 허용하고 패널심리 및 패널제출 문서를 원칙적으로 공개
- 비관세장벽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절차(Mediation)를 도입(16. 비관세 조치 중개절차 참조)
- 합리적 이행기간 결정을 위한 패널절차를 도입하고 패널 결정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패소국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함.

2. 상세 내용

가.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범위

- 경쟁, 지속가능발전,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및 다자세이프가드), SPS 등을 제외한 모든 협정문에 적용
- 비위반 제소는 포함되지 않음.
 - ※ 비위반제소 : GATT 체제하에서 무역규범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WTO 출범 이후에는 단 3건만 제기되고, 인용된 건수는 전무
- 제안 단계에 있는 조치(proposed measure)는 분쟁해결 대상에서 제외

나. 포럼의 선택

- 한·EU FTA에서는 포럼 선택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복수의 분쟁해결 포럼의 관할 중복에 따른 절차적 불확실성을 최소화
 - 특정 조치가 FTA와 WTO 규범을 동시에 침해하는 경우 FTA 분쟁해결 절차 및 WTO 분쟁해결 절차를 모두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바, FTA 절차 또는 WTO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되, 선택한 절차가 종료하면 나머지 절차의 개시를 허용
 - ☞ 예컨대 FTA 양허세율에 위반하는 부과금 부과하는 조치가 WTO에 반하는 무역원활화 관련 통관조치로도 인정될 때, FTA 분쟁해결 포럼에서 양허세율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패소하였다면, WTO 분쟁해결 포럼에 거듭 제소하여 WTO 규범에 위반하는 통관조치라는 주장 가능
 - 다만, 당사국은 FTA와 WTO 협정상 동일한 의무(identical obligation) 위반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FTA 포럼과 WTO 포럼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동일 규범에 관하여 각 포럼의 결정이 상충되는 결과를 방지
 - ☞ 예컨대 상기 사례에서 FTA 분쟁해결 포럼에서 무역원활화 관련 통관조치 위반을 주장하여 패소하였다면, 그 당사국이 WTO 분쟁해결 포럼에 가서 같은 내용의 WTO 규범 위반을 거듭 주장하는 것은 불허



- 패널의 규범 해석에 있어서도 FTA상 의무가 WTO상의 의무와 동일한 경우, 패널은 WTO 분쟁해결기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여 WTO 분쟁 해결절차와 잠재적 상충 가능성을 최소화

다. 계절상품에 대한 신속한 패널절차 마련

- 부패가능상품 뿐 아니라 계절상품에 대해서도 새로이 신속한 패널 절차를 도입하여, 패널 심리와 최종보고서 작성시간을 단축
 - ※ 계절상품 : 대표기간중 수입이 계절적 요인으로 연중 특정기간에 집중된 상품으로서, 살충제, 스키장비, 독감예방 백신 등이 해당
 - ※ 대표기간 : 계절상품임을 주장하는 측이 임의로 자신에게 유리한 기간을 고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기간 교역추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요건
 - ※ 계절적 요인 : 단순히 교역이 어느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속절차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

라. 패널 절차의 투명성 제고

- 패널심리는 공개하고, 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제출 후 15일 이내에 공개 가능한 버전을 제출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명시
 - 비정부단체의 참여기회 보장으로 투명성 제고 및 절차적 정의 실현
 - 상업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심리할 경우 절차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심리 공개의 부작용을 최소화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서면의견 제출(amicus curiae submission)을 보장
 -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패널은 결정서에서 이를 적시하여야 하나, 동 서면상의 사실적·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는 없음.
 - ※ 제3자 제출 서면을 패널이 고려하는 것은 재량사항(한-싱 FTA), 또는 의무사항(한-미 FTA)
 -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하며, 서면의 분량, 주장의 사실적·법률적

관련성,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활동의 성격, 자원 조달방법, 이해관계의 성질 소명 등 엄격한 요건을 부과



16 비관세조치 중개절차

1. 개요

- FTA 당사국간 사법적인 분쟁해결 절차만을 두게 될 경우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존재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측간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상이슈에 접근하는 방안으로 중개절차(Mediation)를 도입
 - 사안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이해관계 없는 중개인(Mediator)이 협의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권고하는 등 단순한 협의보다는 체계를 갖추는 방식
 - 즉, FTA 당사국간 위원회와 같은 양자 협의채널만으로는 특정 쟁점에 대한 논의 집중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결론 도출이 보다 용이

2. 상세 내용

가. 특징

- 기존의 분쟁해결 절차가 조치의 위법성 여부만을 따져 승패를 가르는 사법적 절차인 반면, 중개절차는 비관세 조치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역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면, 제기될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승패를 판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찾는 데에 주력

- 따라서 동 제도는 무역 원활화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로서, 기존의 분쟁해결 제도를 교체, 대체 또는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차원

- 현재 다자 차원에서도 주로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 한·EU FTA에서 도입되는 중개절차와 유사한 절차의 도입이 논의 중

나. 개 관

단계 명칭	내용	기한	비고
절차신청서 (Initial Request) 제출 (신청국)	① 문제된 비관세조치의 존재, ② 교역상의 피해, ③ 양자간의 관계를 기술		
답변서(Response)제출 (피신청국)	신청서에 대한 대응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중개인 선임 (양 당사국 합의)		답변서 접수일로부터 늦어도 15일	합의에 의한 중개인 선임, 단 미합의시 무역위원회 의장이 추첨으로 선임
상세진술서제출 (신청국)	해당 비관세조치 및 그 효과에 대한 기술을 중개인에게 제출	중개인 선임으로부터 10일	
의견서제출 (피신청국)	상세진술서에 대한 코멘트를 중개인에게 제출	상세진술서 제출로부터 20일	
해결안 제출 (중개인)	상호만족할 수 있는 해결안을 중개인이 제시	중개인 선임으로부터 60일	단, 법적 구속력 없음
해결안에 대한 양 당사국 합의 및 피신청국에 의한 이행	해결안에 대한 양당사국의 합의후, 피신청국은 합의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	지체없이 이행	

- 중개인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선임
- 비용은 양측이 분담하며, 절차 개최지는 피요청 당사자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절차 신청의 남용을 방지



- 중개절차가 분쟁해결 절차의 전심절차가 아님을 명시
 - 중개절차에서 표출된 다음의 각 사항을 분쟁해결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상대방이 중개 절차에서 취하였던 입장
 - 상대방이 중개 절차의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그 사실
 - 중개인이 제안한 해결안

다. 개시

-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절차 개시
 - 일방의 조사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특별한 교역관계인 FTA 당사국 사이에 상정하기 곤란
 - 다만, 피요청 당사자의 영역에서 절차가 진행되어 절차남용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낮음.

라. 적용범위

- 농업을 제외하고 무역구제를 포함
 - 적용범위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및 관련무역규범(무역구제 등)으로 하되, WTO DDA 협상결과에 따라 확대 가능

17 제도·일반 및 최종 규정

1. 제도 규정

- 양측 통상장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무역위원회를 설치(제15.1조)
 -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협정 개정 여부를 검토
 - 양측 영역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
- 협정의 이행 원활화를 위해 무역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설치(제15.2조, 제15.3조)
 - 전문위원회 : 상품무역위원회, SPS위원회, 관세위원회, 서비스무역위원회, 무역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 실무작업반 : 자동차작업반, 의약품및의료기기작업반, 화학물질작업반, 무역구제협력작업반, 서비스MRA작업반, 정부조달작업반, 지리적표시작업반

2. 일반 및 최종 규정

-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구성(제15.13조)
-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하여 총 23개 언어로 된 협정문은 동등한 정본(제15.16조)



- 양측간 서면으로 합의시 협정 개정 가능(제15.5조)
- 일방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고, 6개월 후에 협정 효력 종료(제15.11조제2항 및 제3항)

3. 발효 규정

가. 잠정 발효

- 정식 발효 이전에 양측이 잠정 적용을 위한 각자의 내부절차 완료를 통보한 날의 다음달 첫째날부터 잠정 발효 가능(제15.10조제5항)
 - 한·EU FTA 잠정 적용 조항에 따라,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 완료와 EU 각료이사회의 승인으로 협정의 잠정 발효 가능
 - ※ 리스본 조약 상 한·EU FTA 잠정 발효에 유럽의회의 동의를 요구되지 않으나, EU 집행위는 정치적 고려에서 한·EU FTA에 대한 유럽의회의 동의 확보 후에 한·EU FTA를 잠정 발효하겠다는 입장
 - ※ 잠정 발효시 EU 공동체와 회원국의 공동권한사항(shared competence)은 잠정 발효에서 제외
 - 한·EU FTA에서는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및 문화협력의정서의 일부 협력조항이 잠정 발효 대상에서 제외
- EU는 지금까지 체결한 FTA중 EU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발효에 앞서 잠정 발효
 - EU측은 절차상의 비효율로 인한 정식 발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정 적용을 활용(개별 EU 회원국 모두의 비준에 통상 2-3년이 소요)
 - ※ EU-칠레 FTA의 경우, 2002.11월 서명, 2003.2월 잠정 적용, 2005.3월 정식발효

나. 정식 발효

- 양측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경과후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정식발효(제 15.10조제2항)
 - EU 27개 개별 회원국의 비준 절차가 종료되어 EU 이사회가 정식 발효 관련 결정을 채택하고 이를 EU 집행위에 통보하면, 정식 발효에 필요한 EU측 내부절차 종료
 - ※ 정식발효시 잠정적용에서 제외된 일부조항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한·EU FTA 협정문 전체가 적용 대상
 - ※ 우리측은 잠정발효 후 정식발효를 위한 별도의 국내절차 불요

다. 리스본조약과의 관계

- 2009.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과 2003.2월 발효된 니스조약 모두 한·EU FTA 발효와 관련한 EU측 내부절차(유럽의회 동의요건, 잠정 발효 허용 등)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
 - ※ 리스본조약은 유럽의회의 권한 강화,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확대 등 일부 변동이 있으나, FTA 등 국제협정의 발효 절차는 니스 조약상의 절차와 실질적으로 동일
 - ※ 리스본 조약은 공동통상정책의 모든 사항을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
 - 니스 조약에서는 공동통상정책 중 문화·시청각 서비스, 교육서비스 및 사회보건서비스가 EU 공동체와 EU 회원국의 공동 권한 사항이었음.



참고 EU·칠레 FTA 협정(2002.11월 서명) 잠정적용 사례

- EU·칠레 FTA 협정은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사항(exclusive competence)과 EU 공동체 및 EU 회원국의 공동 권한 사항(shared competence)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잠정 적용을 거쳐 정식 발효됨.

※ 잠정적용 대상 규정 :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 경쟁, 정부조달, 분쟁해결, 제도 등

- 협정 내용 중 배타적 권한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2003년 2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되고 2003년 2월 12일 동 협정 체결에 대한 유럽의회의 동의를 이루어짐.

- 공동 권한 사항을 포함하는 전체 협정은 2003년 6월부터 2005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15개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05년 3월 1일 정식 발효됨.

※ 15개 회원국 의회 비준 시기

덴마크(2003.6.27), 아일랜드(2003.6.30), 영국(2003.7.9),
스페인(2003.11.27), 네덜란드(2002.12.9), 스웨덴(2003.12.17),
그리스(2004.4.1), 포르투갈(2004.4.16), 룩셈부르크(2004.4.21),
벨기에(2004.4.30), 프랑스(2004.6.28), 이탈리아(2004.7.16),
오스트리아(2004.8.5), 핀란드(2004.9.2), 독일(2005.1.21)

참고 한·EU FTA 발효와 리스본 조약과의 관계

1. 개 요

- 리스본 조약은 기존 니스 조약에 비해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사항(exclusive competence)을 확대
- 리스본 조약에서는 EU 이사회 의사결정방식, 유럽의회 의원수 증가에 따른 의결정족수 등에 일부 변동이 있으나, 여타 협정의 발효 절차는 기존 니스 조약상의 절차와 실질적으로 동일
-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사항 확대에 따라 잠정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
 - 2009.12.1자로 리스본 조약 발효

2. 상세 내용

가. EU 공동체와 EU 회원국간의 권한 배분

- 니스 조약은 공동통상정책에 해당되는 분야 중 문화·시청각서비스, 교육서비스 및 사회보건서비스와 상업적 측면(commercial aspects)을 제외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협정 체결은 EU 공동체와 EU 회원국의 공동 권한 사항으로 규정
- 리스본 조약은 공동통상정책의 모든 사항을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
 - 니스 조약과 비교시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사항 확대



나. EU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

- 니스 조약상 EU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가중다수결과 만장일치로 대별
 - 이사회의 가중다수결이 요구되는 경우 : 관세율 변화, 무역자유화 조치, 수출정책 및 무역구제조치, 무역협정 체결, 서비스무역 및 지적재산권(상업적 분야) 협정 교섭과 체결
 - 가중다수결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총 345표중 255표(73.9%) 이상의 찬성,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찬성 및 찬성 득표수가 전체 회원국 인구의 62% 초과라는 세가지 요건 필요
 - 이사회의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무역 및 지적재산권(상업적 분야) 협정이 EU 내부규칙 채택을 위하여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조항을 포함하거나 그 협정이 EU 공동체가 내부규칙 채택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분야와 관련되는 경우
- 리스본 조약도 EU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가중다수결과 만장일치로 대별되고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사항 확대에 따라 일부 조정
 - 이사회의 가중다수결이 요구되는 경우: 니스조약 해당 분야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됨.
 - 이사회의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경우:
 - 가. 서비스 무역, 지적권(상업적 분야) 및 외국인 직접투자 협정이 EU 내부규칙 채택을 위하여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 나. 리스본 조약하에서 배타적 권한사항으로 전환된 것중 아래의 경우
 - ① 문화시청각서비스에 관한 협정 교섭 및 체결시 유럽연합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손상시키는 위험이 있을 경우
 - ② 사회교육건강서비스에 관한 협정 교섭 및 체결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 기관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회원국의 책임을 손상시키는 위험이

있을 경우

- 리스본 조약상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충족 요건의 경우, 총 투표수는 345표로 동일하나 회원국수 및 인구비례원칙은 다소 변동
 - 회원국수 요건 : 과반수 이상 찬성(니스)→ 55%(27개 회원국중 15개 회원국, 리스본)
 - 인구비례원칙 : 62%(니스)→65%(리스본)

다. 유럽의회의 의사결정 방식

- 니스조약상 아래 협정은 유럽의회의 동의를 필요하며 유럽의회는 출석 과반수로 의결
 - 니스조약 제300조는 ①결합협정, ②협력절차가 마련된 제도적 기반 구축 협정, ③중요한 재정적 의미를 지닌 협정, ④EU 법의 개정을 수반하는 협정 체결을 위하여 유럽의회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규정
- 한·EU FTA는 리스본 조약하에서도 유럽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협정에 해당
 - 리스본 조약은 국제통상협정체결에 대한 협상 진전 동향을 유럽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
 - 니스 조약과 마찬가지로 출석과반수로 의결하고, 유럽의회 의원 총수는 니스조약에서는 736명이었으나 리스본 조약에서는 750명(의장 제외)을 상한으로 한다고 규정

한 · EU FTA 상세설명자료

인 쇄 · 2010년 9월

발 행 · 2010년 9월

발행처 ·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FTA협상총괄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번지

TEL · (02)2100-0859 FAX · (02)2100-8097

인 쇄 · 마스타상사